


의정활동보고서



제319회 임시회(2020. 10. 6 ~ 10. 1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보내고 오늘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명절임에도 가족·친지들과
만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3백만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한되고 그리운 것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북이 가진 성장 기반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간다면 지금이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는 우리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경상북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각종 현안들이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은 맞는지 도민을 대신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백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1
III. 의안처리	20
IV. 민원처리	21
V. 본회의 보고사항	23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8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28
☐ 박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48
☐ 김영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79
VII. 5분 자유발언	133
☐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33
☐ 김대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37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1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144

부 록

□ 조 례 안(26건)	149
□ 동 의 안(13건)	335
□ 승 인 안(1건)	361
□ 결 의 안(1건)	365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6일 13시 4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1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 본회의와 7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4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6일(화) 오전 13시 40분에 개의하여 세 분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한 후,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네 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5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종 현안들이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은 맞는지 도민을 대신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

사무감사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경북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경상북도 의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20회 정례회로 2020년 11월 6일(금) 오후 14시 0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20년 10월 6일(화) 13:4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0년 10월 6일 ~ 10월 16일(11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32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1	1	1	1	1	1	1	1	-	4
누 계	691	58	88	83	71	63	65	74	93	96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 6(화) 13:40 (제1차)	☐ 안전처리 ○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 박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영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휴회의 건	
10. 16(금) 11:00 (제2차)	☐ 안전처리 ○ 5분 자유발언 (배진석·김대일·박관수·임무석 의원)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0. 16(금) 11:00 (제2차)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조례안 ○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0. 16(금) 11:00 (제2차)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 6(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 7(수) 10:25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7(수) 10: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문화환경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7(수) 10: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농수산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0.7(수) 10:30 (제1차)	☐ 안전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1년 해양수산물국 소관 출연 동의안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0.7(수) 10:3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교육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7(수)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16(금) 13:50 (제1차)	☐ 안건처리 ○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임무석) 인사 ○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16(금) 13:30 (제1차)	☐ 안건처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박판수) 인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이재도) 인사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16(금) 13:30 (제1차)	☐ 안전처리 ○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홍정근) 인사 ○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시환) 인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0.16(금) 13:50 (제1차)	☐ 안전처리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박차양) 인사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득환) 인사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 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56 (632)	53 (615)	53 (613)	49 (573)	4 (40)	0 (0)	0 (0)	0 (2)	3 (17)	
조 례 안	소 계	28 (344)	26 (332)	26 (332)	23 (310)	3 (22)	0 (0)	0 (0)	0 (0)	2 (12)	
	의회 제안	22 (238)	20 (227)	20 (227)	17 (215)	3 (12)				2 (11)	
	도지사 제출	5 (74)	5 (74)	5 (74)	5 (66)	(8)					
	교육감 제출	1 (32)	1 (31)	1 (31)	1 (29)	(2)				(1)	
규 칙 안		0 (4)	0 (4)	0 (4)	(4)						
예산·결산		(27)	(27)	(27)	(14)	(13)					
동의·승인		15 (84)	14 (82)	14 (80)	13 (75)	1 (5)			(2)	1 (2)	
건의 의 안		0 (3)	0 (3)	0 (3)	(3)						
결 의 안		5 (46)	5 (46)	5 (46)	5 (46)						
기 타 안		8 (123)	8 (121)	8 (121)	8 (121)					2	
청 원		0 (1)								(1)	

※ ()안은 제11대(제301회 ~ 제319회)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50)	(11)	(2)	(2)	(9)	1 (4)	(1)	(13)	(2)	(6)
의 회 운 영										
기 경 제	(7)		(1)	(2)	(1)		(1)	(1)		(1)
행 정 보건복지	(10)	(8)								(2)
문 화 환경	(13)		(1)					(11)		(1)
농수산	(7)	(3)							(2)	(2)
건 설 소 방	1 (10)				(8)	1 (1)		(1)		
교 육	(3)					(3)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 (49)	2 (49)				1
의회운영						
기획경제	(7)	(7)				
행 정 보건복지	(10)	(10)				
문화환경	2 (13)	2 (13)				
농 수 산	(7)	(7)				
건설소방	(9)	(9)				1
교 육	(3)	(3)				
특별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56건(조례안 28, 동의안 14, 승인안 1, 결의안 5, 기타안 8)

2. 처리 의안 : 53건

- 원안가결 : 49건(조례안 23, 동의안 12, 승인안 1, 결의안 5, 기타안 8)
- 수정가결 : 4건(조례안 3, 동의안 1)
- 계 류 : 3건(조례안 2, 동의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28건(원안가결 23, 수정가결 3, 위원회 계류 2)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9.25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	20.9.22	도지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도지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도지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9.25	이철구 의원	경상북도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계류
6	"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7	20.9.22	도지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	"	도지사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김상조 의원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9.25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12	"	곽경호 의원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3	20.9.25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14	20.9.22	조주홍 의원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15	"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6	20.9.25	홍정근 의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
18	"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
19	"	박영환 의원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20.9.22	교육감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	김상조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23	"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24	20.9.25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원안 가결
25	"	박미경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26	"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원안 가결
27	"	김하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8	20.10.6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동 의 안 : 14건(원안가결 12, 수정가결 1, 위원회 계류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9.22.	도지사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2	"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
3	"	"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
4	"	"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5	"	"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6	"	"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	"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
8	"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9	"	"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0	"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계류
11	"	"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2	"	"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3	"	"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4	"	교육감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승 인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10.6.	의 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결 의 안 : 5건(원안가결 5)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 10. 16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 가결
2	20. 10. 16.	위원장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	위원장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	위원장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	위원장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기 타 안 : 8건(원안가결 8)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10.6.	의장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 가결
2	"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	의장	휴회의 건	"
4	20.10.16	의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
5	"	의장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	의장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	의장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	의장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26건(도 20, 교육청 6)

연 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393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11. 5.	도
2	제4394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	제4395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	제4396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	제4397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
6	제4398호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7	제4399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8	제4400호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9	제4401호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0	제4402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1	제4403호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2	제4404호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13	제4405호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
14	제4406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15	제4407호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6	제4408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7	제4409호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	"
18	제4410호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	"
19	제4411호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0	제4412호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제4413호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청
22	제4414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
23	제4415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
24	제4416호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25	제4417호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
26	제4418호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020년 10월 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평화로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장 큰 이슈로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통합에 대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와 책임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가 앞섭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서는 경상북도 수장이 되시면서 10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지사님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러한 공약들을 구체화시켜 도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지사님 공약에서는 통합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북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또 다른 카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도민들이 경상북도 수장이신 도지사님과 도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약속하셨던 공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문제입니다.

도청이 지난 2016년 2월에 이전하였습니다. 개청식에 즈음하여 도민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옹도 경북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2027년까지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인구 2만에도 못 미치며, 도심 내 상가는 비어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계획 초기에 목표했던 유관기관·단체 130개 기관 중 현재 51개 기관만 이전한 상태입니다. 처음 이전 의사를 밝혔던 유관기관·단체는 타 시·군으로 분산 배치되어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도청신도시로 이전 의사를 밝힌 유관기관마저 그 동력을 잃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지난 6월 29일 민선7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방향 브리핑에서 도청신도시가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신발전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 시기 문제입니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론화위원회, 시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6월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본구상대로라면 특별법 통과 시기를 내년 6월로 계획하였으나 벌써 12월로 이미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구상이 꼼꼼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라 특별법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경상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 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과연 가능하다고 도지사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통합 명분과 실익 체계적 분석 미흡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불과 4개월 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본구상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통합의 필요성, 국내외 통합사례를 제시하고 행정통합 기본구상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장황하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SWOT 분석 등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함께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합으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과 추진 절차 등만 제시하여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통합 명분이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인구 500만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서 분권을 논하고, 중복 투자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막겠다지만 통합 방식이 1 대 1 통합으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

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각종 넘비시설 입지 갈등 등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6월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지리학회보에 마산·창원·진해의 행정 구역 통합 효과라는 논문에서는 당시 주요 통합 효과로 제시되었던 도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사례 역시 긍정적 효과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냥 장밋빛 전망만으로 줄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이 통합되지 않아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도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상황에서 이미 내용이 한 차례 변경되었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도 줄속 처리하고,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을 종용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원 60명에게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공론화위원회와 시도민 추진위원회 판을 다 짜놓고 이제 와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는 오늘,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대 문화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경상북도의 수장이 되시면서 ‘문화관광 경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관광 산업과 정책이 큰 변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3대문화권 기반조성사업 현황 (완료35, 공사중7, 설계중1)

구 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 고	구 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 고
도청	신라문화당청 박물관	48,774	21.3월 예정	경산	신라왕릉유적해설터	3,821	
	동해안 2만년역사길	1,569			물의 길 누리길	16,646	
경주	신라왕릉유적해설터	88,550	설계중	구미	삼국유사기암누리	110,647	
	신라금속 공예지구	31,494			신라신 역사마을	39,654	
경인	함박산하야생비행관	93,054		의성	비룡산유적문화길	12,045	
	무술구국정관가도	11,573			슬누리 2천보 시장	39,768	
연동	서해안고대문화유적	184,371	21.6월 예정	영덕	사부유형 누리터	30,459	21.6월 예정
	한국문화대백과	133,520	21.6월 예정		홍산대(가)방	23,856	
	선성진 문화단지	33,742		영덕	낙동강역사문화산수길	46,269	
	유점문학 유적지아	17,210			동해안자연농작길	8,757	
구미	전통 및 다채로운마을	13,410		경노	신라왕릉유적해설터	60,952	
	초지지 역사랜드	35,026			가리역사문화대(역사문화대)역사문화대	61,314	
	낙동강역사문화길	30,005		구미	낙동강역사문화길	2,309	
영주	한국문화대백과	154,486	21.6월 예정	상주	가리역사문화대(역사문화대)역사문화대	12,259	
	무성지전문화경관	21,109			구미구국정관가도	10,814	
영진	신라왕릉유적해설터	54,595		영진	낙동강역사문화길	11,753	
	물의 길 누리길	36,365		예천	백성문화상생발전	52,416	
상주	낙동강이마(가)리	92,545	21.12월 예정		서해안고대문화유적	47,659	
	가리역사문화대(가)리	15,267	봉화	구미구국정관가도	30,979		
	태평성대(가)리	15,527		영진구국정관가도	42,116		
문경	낙동강역사문화길	111,524		문경	수북문화대(가)리	9,776	
					수북문화대(가)리	19,667	

3대 문화권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은 안동의 세계유교선비공원을 포함 23개 시·군에 걸친 43개 지구 사업과 1개 진흥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9,843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기반조성사업은 종료되었으며 남은 사업도 내년이면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조성된 3대 문화권 사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경북 관광산업 발전과 연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별사업 발전 방안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존에 조성된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대부분 B/C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 실적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투입되는 자본 대비 수익 실현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성공사례로 든 구미 에코랜드는 2019년 기준으로 방문객은 30만 6,428명으로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수입은 2억 5,200만 원인 것에 반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8억 6,8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22만 916명의 방문객들이 찾은 경주화랑마을의 수입은 15억 400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24억

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객 수가 비교적 많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대부분의 사업은 얼마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안동은 유림문학유토피아, 선성현문화단지, 전통빛타래 길쌈마을 등 3개 사업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도 내년이면 완료가 되지만,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본 의원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발전시켜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또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부터 경북 문화여행 HI! STORY 경북, 3대 문화권 통합시스템 구축, 3대 문화 야간 관광상품 개발 등 3대 문화권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41억 1,100만 원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목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목표 의식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북은 10여 년간 곳곳에 3대 문화권 사업이라는 아름다운 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 이제 경북 보석들을 잘 꿰어 귀한 보물로 만드는 것은 도의 역할입니다. 시·군에 퍼져 있는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엮고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5G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디지털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군과 서로 협력하고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대 문화권 사업의 경제성과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3대 문화권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인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대 문화권 사업은 하나의 시·군의 노력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도가 향후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의 각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안동 강남 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와 관련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도시개발 현황입니다.



강남동은 2001년에 택지개발이 되었고 옥동은 2008년에 택지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중학교 위치 현황입니다.



모두 강북 지역에 7개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동 시내에는 7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1992년 경안중 이전과 1999년 길주중 신설 이후 중학교의 위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안동시는 2001년 준공된 강남동(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2008년 준공된 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안동시 지역별 인구의 분포도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안동시 강남동에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1만 381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강남동에 위치한 강남초등학교에는 88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성희여고, 안동고등학교, 영문고등학교 등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지만 중학교는 모두 강남동

지역 강 건너편 강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강남동 주민들은 안동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끊임없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동시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안동시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강남동 지역의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불가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해 왔습니다. 많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본 의원에게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동 지역 학령인구는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링 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설립이 결정되면 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므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별도 협의한 바가 없다’라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결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안동교육지원청 안에서 몇 년째 머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껏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수년간 지역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신설 및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신설 준비를 하고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재보완하고 다시 교육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미리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강남동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학생들의 복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분포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동시 강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 강남동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행정청은 일정 기준만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시는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역별 인구분포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위치는 수십 년째 그대로여서 인구 분포와 학교 배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학생들은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현재 위치에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를 개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의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강남동 지역 중학생들을 위해 안동시 강북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중 하나를 강남동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중·고 병설 학교 설립에 따른 재정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고 병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고 병설이 중학교를 신설·이전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유기질비료 및 드론방제 등 농민 지원 확대 방안, 지방도 선형개량 및 교량 확장 등과 관련해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 지방도 935호선의 선형개량과 지방도 928호선 교량 확장 및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을 잇는 도산대교 건설 추진사항, 유아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준비 상황 및 농촌지역 원격교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농업 분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농민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시름에 잠긴 농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매일수록 농민들을 위해 도와줄 것이 없는지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신호광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유기질비료 지원, 드론방제 지원 등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유기질비료 지원 문제

현재 경상북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유기질비료와 토양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기질비료의 경우 인기가 많아서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신청한 수량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 43만 3,947톤, 2019년 42만 5,860톤, 2020년 41만 9,900톤 등 해마다 지원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농민들이 신청한 수량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도(農道) 경북에서 농민에 대한 사업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 빠진 농촌을 지키고 우리 땅에 터 잡아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농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경북의 땅을 지키고 가꾸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사짓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합니다.

2. 드론방제 지원 문제

지난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 드론 배송을 1차적으로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이 아닌 드론이 집 앞까지 택배를 배송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드론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택배, 인터넷 통신, 농업, 환경보호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방제, 파종, 작황 예찰, 병해충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민이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는 등 여러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드론 활용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에 드론이 유용하게 쓰이려면 농민들이 드론을 직접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현실에서 고령의 농민들에게 드론의 조정·관리를 맡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가의 살림에 고가의 드론을 구매하게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이 앞장서서 농업 드론방제 등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개단(시·군)에 52명이(드론 40대) 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회 788

ha를 지원했으며, 2020년 9월 현재 311회 4,717ha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 도비는 2019년 1억 8,000만 원, 2020년 1억 4,4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에는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매년 방제단의 활동이나 도의 예산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경상북도의 농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드론은 경상북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는 농업 드론방제 지원 등 드론을 활용한 농업 경쟁력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도(農道) 경북은 농민들의 지원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한 발짝은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량이 매년 줄고 있는데 지원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농업자재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는 농업 드론방제 지원 사업을 비롯한 농업 분야 드론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방도 선형개량 및 교량 확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 933호선, 지방도 935호선의 선형개량과 지방도 928호선 교량 확장의 시급함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지방도 933호선 구간은 도로 오르막

경사 및 접속도로 시계불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지방도 935호선 구간도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으로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통행 및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녹전면 녹래리 지방도 928호선 구간은 회전반경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량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민의 안전은 한시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당 지방도 선형개량 및 교량 확장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경북 안동 도산면과 예안면을 잇는 도산대교 건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안동댐 담수로 인한 교통 단절로 지역 주민들은 도로우회 등 불편을 수십 년째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서원·퇴계종택, 이육사 유적지, 선성현문화단지 등 유교문화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이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급히 지방도 933호선,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 및 지방도 928호선 구간 교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산대교 건립을 위해 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학부모·교원을 위한 체험·연수·연구·유치원 평가 등을 실시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 전담기관입니다. 이미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안전한 체험교육환경 제공 및 교원들을 위한 연수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아쉽게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포항, 경주 등 9개 교육청에서 폐교와 학교 내에 설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교사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유치원 평가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등에서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 행복한 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성 및 창의성을 신장하고 교원들에게 맞춤형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며 부모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아이 낳기 좋은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주장하는 경상북도에서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기관 하나 없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아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

진흥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유아교육 지원을 전담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원격으로 수업을 받다 보면 대면수업 보다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집안 환경 등에 따라 학생 간 학력 불균형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 없이 모든 학사 일정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력하신 교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원격교육을 실시하면서 발생하였던 어려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격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미래에 닥칠 위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학기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육감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원격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의 많은 농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은 이런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향후 농촌지역 원격교육 확대 지원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0월 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년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채아 의원입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경북이 어렵습니다. 전국 대비 경북의 성장률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북에는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켰던 정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저력이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가 줄어 이전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무상교육 완성으로 자체수입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교육청의 재정공시 '18년도 공유재산 관련 표입니다.

〈표-1〉 2018년도 공유재산 현재금액

구분	단위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 중 증감액						'18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666,393		1,072,02		1,256,53		96,53		786,06
토지	m²	42,5585	2164,383	66,234	725,974	200,96	764,173	1,881,72	38,199	42,3804	2880,317
건물	m²	5,018,662	4187,60	122,169	407,829	226,515	456,990	104,345	42,161	5,140,822	4355,408
임목축	본	964,497	23,689	62,322	1,063	76,381	1,743	14,659	69	1,021,30	24,752
공작물	석	889,808	284,288	196,724	42,813	222,882	52,855	26,157	10,041	1,101,221	327,102
기계·기구	점	528	873	△302	△39	199	25	402	64	326	834
선박·항공기	척	1	17	-	-	-	-	-	-	1	17
무체재산	건	351	52	△42	△8	40	8	82	16	309	44
유가증권	주	-	-	-	-	-	-	-	-	-	-
지상권 등 용익물건	건	29	2,441	1	70	3	260	2	190	30	2,511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	-	-	-	-	-	-	-	-	-

679백만원

'18년도 결산서상 입목매각
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내역 증감액을 살펴보면 '18년 임목 감소액이 1만 4,659그루, 6억 8,000만 원가량입니다. 6억 8,000만 원의 임목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18년 세입결산에서 임목 매각대 6,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19년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표-2〉 2019년도 공유재산 현재금액

구 분	단위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중 증감액						'19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841,076		896,082		790,088		284,082		8,397,137
토지	㎡	42,343,049	2,490,317	-146,925	130,263	2,315,400	236,581	2,463,206	106,317	42,196,134	3,026,586
건물	㎡	5,140,822	4,305,408	79,735	380,381	330,748	482,309	241,012	101,927	5,220,567	4,687,550
임목축	본	952,130	24,782	66,294	907	94,597	2,081	28,303	1,034	1,018,434	25,716
공작물	석	1,151,221	327,102	159,502,830	43,364	159,638,864	57,767	46,084	14,403	160,754,051	370,466
기계·기구	점	336	834	113	412	113	412	0	0	449	1,246
선박·항공기	척(대)	1	17	0	0	0	0	0	0	1	17
무체재산	건	309	44	-14	-2	9	1	23	3	295	42
유가증권	주	0	0	0	0	0	0	0	0	0	0
지상권 등 용 익물건	건	30	2,511	63	646	128	987	65	341	133	3,157
특허권 등 기 타권리	건	0	0	0	0	0	0	0	0	0	0

1,034백만원

'19년도 결산서상
입목매각
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경상북도교육청

'19년 나무의 감소액은 2만 8,303그루, 10억가량이고 결산서상 매각대금은 8,300만 원입니다. 너무 커서 옮길 수가 없어 폐기한 임목이 있다고 하여도 너무 큰 차이입니다.

한쪽에서는 폐교다 뭐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임목죽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한편으로는 '18년 17억, '19년 20억의 임목을 사들이고, 학교 숲 조성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체 수입을 살펴보면 항목 중에 임목 매각수입 '18년 6,000만 원, '19년 8,300만 원입니다.

교육감님, 나무 매각 수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육감 임종식

예, 먼저 박채아 의원님 전공을 살리셔서 결산검사위원으로도 활동해 주시고 오늘 또 회계 관련 질문을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임목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북의 교육기관, 학교에 있는 임목죽이 100만 주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보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태풍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공사 관계로 해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 중에는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도 있지만, 가치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전환을 해서 신설학교나 또는 새로운 기관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옮기는 비용, 이식하는 비용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옮겨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나무는 옮겨서 우리가 관리 전환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수목 관리를 위해서 학교수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목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할지 또는 관리 전환해야 할지 이런 문제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 관리 중에 임목죽 관리가, 제가 한 학교를 샘플로 받아 봤습니다. 폐교하자마자 수천 그루의 나무가 전부 폐기로 한 번에 처리가 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개나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무척 어렵겠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나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처럼 세입이 감소될 때 이런 임목 재산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더욱 수입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임대 가능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서 자체 수입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 교육청이 내년 세입 감소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성질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계	56,789,353	100.00	56,597,824	100.00	60,541,898	100.00	65,611,418	100.00	71,812,652	100.00
인건비	33,123,755	58.35	35,217,377	62.22	36,351,103	60.04	38,048,015	57.99	40,123,461	56.00
교원	23,385,927	41.20	24,578,806	43.43	24,902,098	41.47	25,965,695	39.57	27,138,679	37.80
교육전문직원	403,369	0.71	429,922	0.76	444,279	0.74	463,978	0.71	488,806	0.68
자립공무원	3,529,121	6.21	3,689,874	6.52	3,757,889	6.21	3,901,280	5.95	4,017,361	5.61
사립학교 교직원	4,083,329	7.20	5,001,975	8.84	5,199,328	8.60	5,396,320	8.21	5,659,957	7.88
기타직	706,021	1.24	1,133,084	2.00	1,649,087	2.73	1,820,145	2.78	2,364,806	3.29
맞춤형복지비	396,973	0.70	383,719	0.68	396,611	0.66	410,788	0.63	462,753	0.65
물건비	1,984,814	3.49	1,944,437	3.44	2,046,072	3.41	2,168,288	3.31	2,387,033	3.33
운영비	1,803,134	3.18	1,767,430	3.12	1,862,567	3.10	1,978,028	3.01	2,179,026	3.04
여비	97,202	0.17	92,072	0.16	95,506	0.16	103,026	0.16	107,828	0.15
업무수선비	34,370	0.06	32,845	0.06	33,979	0.06	35,690	0.05	43,006	0.06
사무수행장비	7,190	0.01	7,255	0.01	7,223	0.01	7,282	0.01	7,426	0.01
복합수행장비 등	42,478	0.07	44,835	0.08	46,717	0.08	48,272	0.07	49,747	0.07
이전지출	2,820,214	4.97	3,083,448	5.45	3,055,728	5.11	3,241,249	4.94	3,318,927	4.63
자립자립교육보조	1,612,548	2.84	2,100,715	3.75	2,020,007	3.36	2,080,665	3.17	2,117,577	2.96
자립자립교육보조	236,933	0.42	113,571	0.20	128,060	0.21	171,095	0.26	248,547	0.35
기타이전지출	970,741	1.71	849,162	1.50	917,662	1.53	869,489	1.33	852,702	1.19
자본지출	4,905,479	8.64	4,541,761	8.02	5,109,226	8.44	5,084,520	7.75	5,686,751	7.92
토지매입비	640,403	1.14	696,281	1.07	525,236	0.87	500,919	0.76	513,220	0.72
건설비	3,993,044	7.05	3,693,944	6.53	5,184,794	8.64	4,158,529	6.34	5,132,711	7.14
유·무형 자산취득비	194,328	0.34	172,097	0.30	271,409	0.45	296,127	0.45	284,037	0.40
기타 자산취득비	78,594	0.14	89,419	0.16	127,786	0.21	137,963	0.21	156,769	0.22
상환지출	1,086,644	1.91	1,155,096	2.04	395,440	0.65	2,396,829	3.65	4,083,591	5.69
지방교육채	1,086,644	1.91	1,155,096	2.04	395,440	0.65	2,396,829	3.65	4,083,591	5.69
연출금 등	12,257,348	21.58	11,679,227	20.64	11,893,296	19.65	12,666,361	19.31	13,683,989	19.05
공립학교	11,129,767	19.59	10,635,340	18.79	10,899,024	18.00	11,507,280	17.54	12,636,238	17.59
사립학교	3,127,581	5.51	3,043,887	5.38	3,094,272	5.11	3,159,081	4.83	3,298,751	4.59
예비비 및 기타	9,499	0.02	16,599	0.03	81,091	0.13	38,130	0.06	419,001	0.58

〈표-3〉 최근 5년간(14~18) 성질별 세출결산액 현황

10.73%

(단위 : 백만원, %)
*경상북도교육청

이 표는 최근 5년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건설, 토지매입 등 자산취득 자본적 지출이 '18년 전체 세출예산의 10.73%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 표는 도지역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도별	성질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결산액	구성비
도지역	계	34,449,646	34,196,844	36,433,853	39,737,581	43,755,237	100.00
	인건비	19,947,582	21,129,446	21,811,067	22,873,953	24,162,257	55.22
	교원	14,119,458	14,724,213	14,972,288	15,644,467	16,367,714	37.41
	교육전문직원	261,041	279,523	287,641	298,678	314,111	0.72
	자립공무원	2,311,576	2,413,499	2,464,458	2,550,744	2,625,106	6.00
	사립학교 교직원	2,477,636	2,635,543	2,740,114	2,837,917	2,985,212	6.82
	기타직	542,909	853,857	1,113,730	1,296,933	1,592,362	3.64
	맞춤형복지비	234,962	222,811	232,836	245,214	277,752	0.63
	물건비	1,222,507	1,229,588	1,264,264	1,310,219	1,417,497	3.24
	이전지출	1,656,312	1,899,608	1,814,856	1,928,859	2,043,396	4.67
	자본지출	3,053,713	2,898,220	4,005,547	4,638,783	5,015,337	11.46
	토지매입비	427,313	407,914	329,556	279,881	327,925	0.75
	건설비	2,450,450	2,318,030	3,363,669	4,033,377	4,409,427	10.08
	유·무형 자산취득비	112,183	110,968	198,225	205,223	195,218	0.45
	기타 자산취득비	63,767	61,308	114,086	120,301	82,766	0.19
	상환지출	1,090,769	70,283	260,623	1,466,050	2,677,844	6.12
	지방교육채	1,090,769	70,283	260,623	1,466,050	2,677,844	6.12
	전출금 등	7,473,828	6,964,558	7,240,127	7,501,346	8,370,574	19.13
	공립학교	5,759,473	5,306,934	5,564,012	5,798,134	6,583,895	15.05
	사립학교	1,714,355	1,657,624	1,676,115	1,703,212	1,786,679	4.08
	예비비 및 기타	4,936	5,141	37,369	18,371	68,332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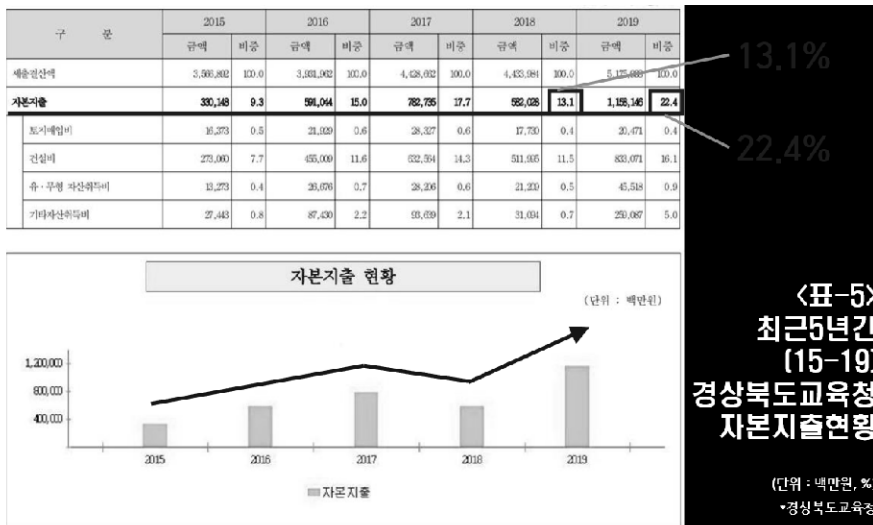
〈표-4〉 최근 5년간(14~18) 성질별 세출결산액 교육청별(도지역) 현황

11.46%

(단위 : 백만원, %)
*경상북도교육청

도지역 자본지출 평균액은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11.4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건설 중인 세종의 경우는 21%로 약간 높기는 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공시하는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경상북도 자본지출 현황을 보시면 '18년 13.1%, '19년 22.4%로 도지역 평균율의 2배가량을 웃돌고 있습니다. '19년 자본지출 금액을 보면 당초예산 5,304억 원 대비 최종 결산 지출이 2배가량 증가한 1조 1,581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포항지진, 예천 신도시 확충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해 보건대 세출 구조를 제로섬 베이스에서 다시 확인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다수의 수학체험관 건립 등의

자본지출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임종식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방금 '18년도 비교해서는 도지역이 12.42%, 경북이 13.1%,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비교는 도지역 12.42%하고 '19년도의 22.4%를 비교하는 것이 비교가 좀 적절한 그런...

'19년도 비교를 하면 역시 우리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전체가 도지역이 15%, 우리가 20.4%인데 이 자본지출 금액 중에는 자산취득과 기금 조성이 있는데 이 중에 큰 부분이 지난해 우리가 예산이 좀, '18년도가 많았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재정안정기금 조례를 만들고 재정안정기금을 2,270억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이 자본지출 금액에 포함되다 보니까 좀 많고, 그리고 경북은 지역이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자산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노후화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체험관을 짓더라도 지역이 좁은 지역은 하나만 지으면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경북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지금 네 곳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더욱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 하더라도 우리가 18% 정도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사실 건물, 자산만이 사실 교육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수의 질을 확충하고 교육 복지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실 표에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지만 우리 도가 교육복지사업 비율이 조금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지출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복지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경북도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너무 건물에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 교육감 임종식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다음 표를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항목입니다.

<표-6>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2020년 합계 (2020.1.1.~2020.9.23.)				22,100	예비비지출
연도	부서명	사업명	지출일	지출액	지출사유
2020	교육복지기	초·중 긴급돌봄 혁신 중식비 및 인건비	6.15.	1,765	코로나 19 대응 초·중 긴급돌봄 학생 중식비 및 인건비 지원 -중식비 836,875천원 -인건비 928,114천원
2020	윤주교 교육기	삼지원 긴급돌봄 학생 중식비 및 인건비	6.14.	1,955	코로나 19 대응 유사촌 긴급돌봄 학생 중식비 및 인건비 지원 -중식비 814,250천원 -인건비 1,140,500천원
2020	체육건강과	고로니 19 예방내착지원 5차	7.6.	754	코로나-19 예방내착지원 -고로니-19 예방내착비 188,898천원 -마스크 배급 구입 349,365천원 -상관반 급량비 등 215,930
2020	학생생활기	고로니 19 대응 학교급부 보건인력 2차기 인장 지원 사업비	8.4.	1,326	코로나 19 대응 학교급부 보건인력 2차기 인장 지원 곡강초 등 160교
2020	재무정보과	포항 가칭)하원고 학교용지취득대금	9.17.	3,165	포항 가칭)하원고 학교용지 취득
2020	세무정보과	태백(대이식지)아해 피해 교육시설 복구(복구비)	9.18.	1,389	태백(대이식지)아해 피해 교육시설 복구(복구비) (1)산호농학교 외 5개교(2개교)

*경상북도교육청 (단위 : 백만원)

9월 23일까지 예비비 221억 원이 지출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관련 긴급복구비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9월 17일 지출항목을 보시면 31억 원가량 가칭 하원고 학교용지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에서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받았고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종식

예, 맞습니다.

○ 박채아 의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입니다. 여기서 이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때 1심, 2심 모두 이기고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

입니다. ‘판약에’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예비비 지출 항목 같은 경우를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판결의 선고일이 6월 11일입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 **교육감 임종식**

예, 맞습니다.

○ **박채아 의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2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 **교육감 임종식**

8월에 해서 9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박채아 의원**

예, 2차 추경이 교육위원회를 8월 27일에 통과하고, 본회의를 9월 8일에 통과했습니다. ‘과연 예비비로 취득했어야 했는가?’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판결 선고일 6월 11일과 대금지급일 9월 17일 사이에 2차 추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예비비로 지출하라든지 의회 보고 없이 행하라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법적 다툼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종식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학교부지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부지대금 지급을 정당 채주에게 해야 되는데 그 정당 채주가 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소유권이 두 차례나 이전이 되니까 이 조합에서 대금청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청구할지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이 토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4개의 새마을금고하고...

○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조금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임종식

예, 4개 새마을금고하고 개인에게 46억이나 되는 그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대금은 31억인데, 그래서 이 4개의 새마을금고, 또 개인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물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힘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표 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스	단	교육위원회	구분	지정지역	면 1
상임위원회					담당부서
제 목					정책기획관
지적사항요지					
현황					
저의사항					
권도					
발달자					

존경하는 교육감님, 3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또한 청년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들이 또다시, 1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임종식

예, 부지나 사정이 조금 있었고, 이 문제를 교육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 발생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병상 대부분이 요양병원이고, 감염병 전문병원은 물론 상급 종합병원도 한 곳도 없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경북은 2.1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입니다.

〈표-8〉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행정구역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A=B×1,000)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A)	주민등록인구 (B)
전국	3.0	153,744	51,849,861
서울특별시	4.4	42,685	9,729,107
부산광역시	3.4	11,456	3,413,841
대구광역시	3.4	8,384	2,438,031
인천광역시	2.5	7,366	2,957,026
광주광역시	3.7	5,390	1,456,468
대전광역시	3.6	5,319	1,474,870
울산광역시	2.3	2,668	1,148,019
세종특별자치시	1.5	526	340,575
경기도	2.4	31,510	13,239,666
강원도	2.5	3,916	1,541,502
충청북도	2.4	3,802	1,600,007
충청남도	2.3	4,958	2,123,709
전라북도	3.0	5,540	1,818,917
전라남도	2.5	4,725	1,868,745
경상북도	2.1	5,646	2,665,836
경상남도	2.4	8,159	3,362,553
제주특별자치도	2.5	1,694	670,989

※ 통계청, 2020. 3.

면적 또한 전국 최대고 산악지역이 많아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재난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5월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17개 의료기관을 선정했고, 시·도의 신청을 받아 83개의 병상을 확충하는 이 사업에 경상북도는 단 하나의 음압병실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표-9-1〉 지역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전후 비교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기존	31	10	8	16	12	8	5	26	6	-	5	7	8	4	3	4	8	161
확충	19	5	5	3	-	5	4	14	3	-	3	5	5	-	-	12	-	83
누계	50	15	13	19	12	13	9	40	9	0	8	12	13	4	3	16	8	244

※ 질병관리청, 2020. 5.

또한 6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한 11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중부권의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영남권의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선정되었고, 대구·경북은 배제되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여러 가지로 의원님 지적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제 도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원래 의료지역은 대구·경북이 한 권역입니다. 한 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구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이 대구에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를 겪어보니 대구에 환자가 짝 차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상급병원을 꼭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상급병원을 신청도 해 냈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에 700병상을 잘 지어놨는데 아직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북 몫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사망사례가 나타낸 배경을 민간의료 중심의 병상을 확충해 온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표-9-2〉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결과		
중부권역	영남권역	호남권역('17. 8월 기지정)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조선대병원

경상북도가 스스로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북부권의 안동의료원, 서부권의 김천의료원, 동부권의 포항의료원이 있습니다. 남부권의 시·군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천, 경산, 청도 환자의 입원 현황 관련표입니다.

분류	인원(명)	비고
경북확진자	1470	
영천·경산·청도 확진자	845	
입원지역	서울	108
	부산	3
	대구	26
	인천	3
	광주	3
	대전	7
	경기	2
	충북	2
	충남	3
	전북	3
	전남	1
	경북	682
	경남	2

〈표-10〉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천, 경산, 청도 환자
입원 현황

*경상북도, 2020.9.21. 0시 기준

경북 확진자 1,470명 중 영천, 경산, 청도 확진자가 845명이었고, 경북 전역으로 682명, 서울권역으로 108명, 대전으로 7명 등 타 광역으로 137명이 흩어졌으며, 가장 가까운 대구에는 26명, 단 3%만이 입원해 행정구역을 맞대고 대구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이들 지역은 대구지역 의료인프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21세기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경상북도가 감염병에 대응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남부권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이 있고, 남부권의 경산, 청도, 영천지역에는 지금 의료원이 없는데 거기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따지면 대구권에 속해 별도의 의료원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와 같이 재난상황이 계속되면 공공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남부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실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우리 형편상,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마는 경산지역은 사실상 대구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기관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대구에 가면 상급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활병원을 곧 개원하는데 남부재활병원을 경산에서 운영하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대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을 먼저 코로나 때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활병원을 감염병 시설을 갖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코로나 같은 재난상태가 생기면 경산, 청도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쉽게 말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경산, 청도에 그렇게 코로나 발생이 많았는데 가까운 대구에는 26명만이 가고, 그분들이 안동까지, 포항까지, 또 서울 등 장거리로 가서 입원하는 이런 상태를 방지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당장 의료원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재활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MOU라든지 음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사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11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에 경산시랑 구체적인 협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다음 비상시에 인력충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협약이 10월에 나오고,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개원 전에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이 지사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재활병원과 경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혹시 개원 전에, 10월 중에 MOU나 구체적인 방안을...

○ 도지사 이철우

예, 일단 오늘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산, 재활병원 측과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 박채아 의원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표-11〉 경상북도 신규투자유치(MOU) 및 기업 현황 관련						
년도	체결건수	투자액 (억)	고용창출인 원(명)	현재까지 투자액(억)	현재까지 고용인원(명)	비고
(총계)	97건	153,416	28,137	63,646	13,232	
2015	15건	27,655	4,193	20,024	1,309	
2016	15건	29,958	11,378	17,936	8,556	L사에서 7000명 고용 (당초936명예상)
2017	12건	14,768	2,370	8,815	1,498	
2018	14건	22,112	6,428	14,783	1,733	
2019	19건	36,545	2,489	1,508	100	
2020	22건	22,378	1,279	580	36	

*경상북도, 2020. 9.

표 11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신규투자유치 및 기업현황입니다. 경북의 MOU 체결 건수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총 97건, 투자액은 15조 3,000억 원, 고용인원은 2만 8,000여 명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6조 3,000억 원, 고용인원은 1만 3,000여 명이 고용되었습니다.

MOU 투자계약기간이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사실, 투자보류와 현재까지 투자진행이 전혀 안되었던 건을 실패로 본다면 MOU 투자 결실은 많이 줄어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MOU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적주의에 몰입해 겉치레적인 MOU만 쫓다보면 우리도가 정말 중요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망각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시를 가도 입질이 와 당긴다고 해서 다 달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입질하는 것을 안 당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는 비교적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들어와서 지금 53개의 기업투자유치, MOU를 했는데 한 4개 정도가 완전 포기상태에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했다고 1, 2년 만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 그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진도가 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현재 수준에서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박채아 의원

예,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전체 산업	지	210,791	1,066,244	222,506	1,000,000	236,079	1,079,362	232,000	1,117,702
	1~4명	1,022,111	3,120,865	1,011,252	3,169,006	1,017,860	3,200,079	1,022,109	3,201,799
	5~9명	20,178	129,663	21,360	137,110	21,817	141,131	22,998	146,988
	10~19명	8,407	113,213	6,984	120,663	8,910	110,405	9,180	122,402
	20~49명	5,463	164,681	5,464	163,426	5,511	166,448	5,710	170,348
	50~99명	1,021	100,000	1,610	100,000	1,511	100,000	1,510	100,000
	100~299명	674	105,110	651	102,754	675	107,415	674	107,651
	300~499명	90	35,110	85	31,204	81	29,730	83	31,684
	500~999명	58	39,800	60	41,000	63	42,080	61	41,110
	1,000명 이상	22	56,880	25	61,528	29	65,238	29	60,881
제조업 (10~34)	지	27,510	320,362	20,316	300,902	20,660	321,059	29,217	320,700
	1~4명	17,448	34,761	17,711	35,807	17,816	36,051	18,182	36,981
	5~9명	5,110	31,900	5,406	36,110	5,500	39,008	5,895	40,000
	10~19명	2,390	32,670	2,310	32,002	2,293	31,254	2,303	31,339
	20~49명	1,310	50,910	1,954	59,269	1,880	57,500	1,900	59,000
	50~99명	560	37,364	554	39,413	553	39,044	515	38,984
	100~299명	319	50,671	297	47,250	289	47,227	280	46,100
	300~499명	46	16,620	39	14,029	30	2,970	37	14,042
	500~999명	28	19,004	30	21,513	29	12,551	29	19,181
	1,000명 이상	14	43,980	13	40,119	16	44,192	13	37,961

이 표는 통계청 자료로 경상북도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경북의 총사업체 수는 23만여 개, 종사자 수는 111만 7,000여 명이었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2만 9,000여 개, 종사자 수는 32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1,000명 이상 대기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7년 4만 4,000여 명, '18년 3만 8,000여 명으로 줄어 제조 분야 대기업 존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8년 기준 자료라 현재와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표-13〉 경상북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비율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개)	비율	종사자수	비율
전체사업	~9명	214,767	92.56%	478,382	42.80%
	~49명	223,927	96.51%	600,784	53.75%
	~99명	231,183	99.63%	876,048	78.37%
제조업	~9명	24,077	82.41%	77,123	24.05%
	~49명	26,380	90.29%	108,462	33.82%
	~99명	28,858	98.77%	203,366	6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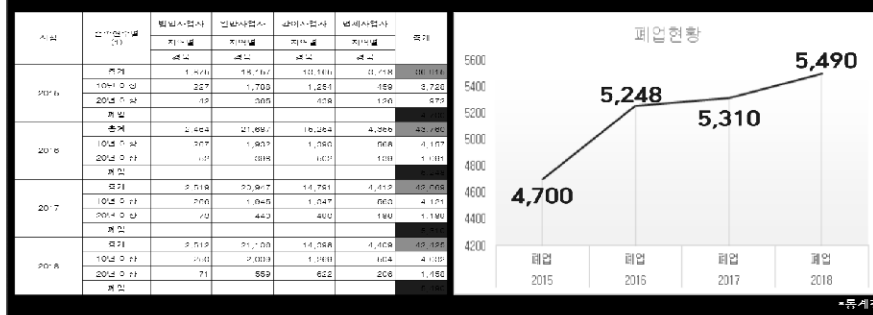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편집

이 표는 경상북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비율입니다. 역시 통계청 자료이며 '18년 기준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 사업체 수 중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들이 전체 사업체의 99.63%,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7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수는 98.77%, 제조업체 종사자 중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수는 6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표-14〉 경상북도 사업자별 폐업 현황



이 표는 경상북도 사업자별 폐업 현황이고 역시 통계청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년 폐업 사업체 수는 3만 6,915 업체에서 '18년 4만 2,425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존속 기업체의 폐업 수는 2015년 4,700개에서 '18년 5만 4,090개로 늘어났습니다. 도내 폐업 업체 중 10년 이상 장기 존속해 온 기업체의 폐업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21년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울산 등과 달리 우리 경북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이런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도내 기업체들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 전해는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저는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다.' 이래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기업체가 도산을 하고 폐업을 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하고 우리 전 법인을 다 등록한 것을 따지면 이렇게 4만 몇 개가 폐업을 했다 나오는데 그것은 통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음식점 같은 것도 1년에 한 30%가 문을 닫습니다. 또 새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로 통계 내는 것은 제조업에 관해서 통계를 내고, 아까 제조업이 우리가 100인 미만이 99.63%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99%가 중소기업입니다, 99%가. '9988'입니다. 그러니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수는 88%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교적 우리는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에는 포스코라든지 LG, 삼성 이런 계열들이 있어서 그동안 탄탄하게 받쳐 줬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구미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LG가 수도권으로 간 경우도 있고 외국으로 간 경우도 있어서 대기업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다시 우리 도에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이런 부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체질 개선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법인으로 등록한,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관리는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채아 의원

그런데 지사님, 사실 제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폐업 자료를 받았습시다만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3,000여 명, 28.6%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경북지역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2008년 45만 명에서 2017년 40만여 명으로 11.9%나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2008년 2만여 명에서 2만 4,000여 명으로 17.2% 증가하여 경상북도의 청년일자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청년정책관실에서 주요 사업 목록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표-16>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실 주요사업 목록 *경상북도						
사업명	사업량	2018년 사업비				비고
		계	기내	도내	시군세	기타
청년협동뉴딜프로젝트	9개 사업	1,000		2,000	2,000	
도시첨단 지역상생교육	100명	1,400	150	450		1,795
중소기업인턴사업제	416명	2,500		1,000	1,500	
고졸청년취업지원사업	40명	300	450	333		100
청년고소기업채용사업	104명	800		400	400	
경북청년근로자 행복가드지원사업	1,530명	2,000		2,000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70명	120		120		
1년+1청년!! 1 채용 빌레이 운동	1,400명	1,100		550	15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70개	2,400		700	1,700	
경북형대리 일자리센터지원	0개 대학	750		300	300	150
내국인시각장애인 지원	12개 내외	4,700	7,200	515	600	1,305
학사학위 취득지원	3개 대학	880		420		410
산악인세상 노세학교 지원	1,728명	1,200	1,200	100	400	1,700
지역기업-청년 희망 이음 지원사업	15개 기업	400	300	50		
삼포구 마이스터고 선원지원	1개 고	1,000	800	200		
북부권청년창업지원사업	10명	800		500	300	10
경북청년메리츠창업육성사업	145명	2,100		650	1,550	
경북청년CEO상화육성지원	0명	1,200		1,300		
상장청년창업패스	7명	500		500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0명	1,172	450	350	350	
청년기업인턴사업	10명	1,200	900	300		100
청년기업인턴사업	203명	4,858	2,305	2,000		453
영미숙창업이브센터 조성사업	1개소	1,400	1,100	210	100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일자리 매칭사업 등 단순 지원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적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청년기업인의 성장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단순 재정 지원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실적만 보고할 뿐 실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혀 추적하고 있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년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과별로 모두 흩어져 있고, 청년정책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기업인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조차 '80년대 29세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우리 도는 그렇다 할 청년에 대한 통계, 청년기업에 대한 어떠한 종합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기업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활용한 연구, 그리고 정책설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늘 우리나라 통계 자체가, 우리 농업 통계나 모든 통계를 봤을 때 시·군 통계는 자체가 통계가 없습니다. 그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 표본을 조사해서 그래서 통계를 만드는데 청년정책관실을 만든 이유도, 청년이 아까 28.4%라 했는데 사실상은 2020년도 현재는 26.3%입니다. 그만큼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저것은 '18년도 통계던데 그런 통계, 청년 관련 정책을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님께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매우 미흡한 것을

느끼고,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청년 실태조차도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기업이 청년이 CEO가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고,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전국적인 통계가 있느냐 하면 전국적인 통계는 통계청조차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국비나 우리 도비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것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의원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도지사가 다 일일이 챙길 수 없으니까 질문을 하면 그것을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이것을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기업이 707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외에 또 청년이라 하는, 법에는 34세까지 돼 있는데 우리는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이 숫자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청년이 매우 부족하고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 이유를 더욱 자세히 분석을 하면 대구·경북을 합쳐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채아 의원

예, 본 의원도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청년 실태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우리 지방정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고,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기업의 자생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창업생태계를 확장하고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청년 창업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창업에 집중된 현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년에서 7년, 창업 도약, 기업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 하시나요?

○ 도지사 이철우

예, 창업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최대 7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겨우 걸음마하려 하는데 지원을 끊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 벼랑 끝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도의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청년들 지원을 하면, 창업을 했으면 지속적인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이 잘 지적해 줬다 생각합니다. 저도 늘 그 점에서 아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며, 경북 권역 재활병원 관련 10월

중에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서면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국장이 직접 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박채아 의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행정 전반에 관한 지적이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0월 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영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현안 해결과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경북 교육 발전과 코로나19 예방대책 수립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은 도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경북의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해보려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띄워 주십시오.

<표 1> 최근 4년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세출효율화
(단위 : 백만원, △는 패널티)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6,531	6,380	4,358	△1,090
인건비 절감	0	0	0	554
지방의회경비 절감	△11	△35	△5	65
업무추진비 절감	166	168	192	31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2,052	△979	△68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557	9,896	6,873	734
민간위탁금 절감	△181	△1,597	△1,723	△4,725

출처 : 지방재정 365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집행부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어서요, 답변 핵심만 짧게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2017년 쭉쭉 이렇게 오다가 2020년 돼서 페널티 받았습니다, 10억. 전국의 전체 감액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해마다 인센티브가 줄고 페널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018년 이철우 지사님 오신 이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절감, 2019년 페널티 17억에서 2020년 47억으로 무려 30억 늘었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김영선 의원

제가 민간위탁금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선 의원

인건비 절감에서는 보시면 인센티브 받았는데 민간위탁금 절감에서 페널티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시·도 공무원은 민간위탁 줄이고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도의 공무원은 웬만한 것은 민간에다 위탁한다, 민간위탁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단은 지방교부세 이 자체 노력 제도는요, 용도가 지정된 국가보조사업과 달리...

○ 김영선 의원

압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반 채용인데요. 이 세출 효율화하고 세입 증대 부분의 노력도를 평가하는데 우리 도가 순수하게 페널티 받은 것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 김영선 의원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한 0.8%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의료급여에 대한 인구가 한 1만 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증가를 했고, 또 1인당 의료급여비가, 진료비가 한 58만 원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 김영선 의원

실장님,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김영선 의원

민간위탁금 절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페널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절감 노력이 부족하니까 페널티 받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지 분야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 김영선 의원

아까도 지사님께서 또 '민간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위탁을

장려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페널티를 받으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 실태조사 할 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선 의원

하시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것을 매년 체계를 잡아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김영선 의원

성과 점점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지, 계속해서 페널티를 맞고 있는데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되겠지요. 잠깐 나옵시다만 안 한 과가 더 많습니다.

<표 3> 경상북도 민간위탁사업 실태조사(지도점검) 현황

실태조사 (사보점검여부)	부서	2018	2019	2020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정책관)	○	○	X
	지자체행정국			
	자치행정과	X	-	-
	인사과	-	X	X
	세비유무과	X	X	X
	청사유무기획과	X		
	회계과	-	-	X
	환경신원자원국(신원자원과)	○	○	○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X	X	○
	어르신복지과	X	X	○
	식품의약과	-	X	-
	사회복지과	X	X	X
	점사곤충사업장	○	-	-
	도속어류신원사업센터	X	-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그런데 이것 서면답변에서 보니까 위탁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러셨는데 그 말 믿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기관에 줘서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효율적인 것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효율도 안 찾고 무조건 말기면 페널티를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위탁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페널티 맞습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하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실태조사를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리고 성과 점검해서 뺄 것은 빼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다음은 세입확충 보겠습니다.

<표 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세입확충
(단위 : 백만원, △는 페널티)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0,267	△13,522	19,103	△1,243
지방세 징수를 제고	769	△2,982	7,759	△8,87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7,728	△9,904	△6,690	△19,460
경상세외수입 확충	△833	1,883	17,093	27,38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904	△153	1,780	△144
탄력세를 적용	188	148	176	195
지방세 감면액 축소	△759	△2,514	△1,015	△344

출처 : 지방재정 365

사실은 세입확충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지방 징수율 제고’ 보십시오. 160억 원, 지난해에 비해서 페널티가 증가했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0억,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것도 19억 페널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페널티가 증가하는 이유 짧게 말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7년 대비 ’18년도는 줄었고요. ’20년도에 조금 늘었다는...

○ 김영선 의원

지사님이 오시고... ’18년 것 가지고 ’20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지사님 오시고 나서가 아니고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2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된 경우에 페널티를 반영한 것이고요.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20년이라는 것은 '18년...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17년 대비해서 '18년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8년, 지사님 오신 이후로 이렇게 자꾸 페널티가 늘다고, 이것 도대체 이유가 뭘니까? 짧게 말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방세 체납액 페널티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상 어떤 체납액이 늘면 증가액 대비 가중치를 한 180%를 주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는데요. 그 페널티가... 우리가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큰 덩어리가 한 2개 있는데 하나는

안동에 골프장 하나 저것을 결손처분해서 그게 한 20억 정도 했고, 또 하나는 경산에 개인사업자인데 부도처리돼서 그게 결손처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영선 의원

고액채납자 관리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표 5>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 1억원 이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억원 이상	210 억원	12.4%	290 억원	15.4%	356 억원	18.0%

출처 : 집행부 제출 자료

최근 3년간 지방세 고액채납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액채납자가 2017년 12.4%에서 2019년 1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매년 체납액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액채납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는데요. 국가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고액채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압류, 또 금융기법에 의한 이분들의 주식 압류, 이런 것까지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민선 7기 들어와서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8년도에 한 202억, '19년도도 한 177억 정도 채납을 징수한 성과도 이룬 적도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성과를 이뤘는데 이렇게 페널티를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늘어난다면서요? 고액채납자 관리를 위한...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채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지방세 세입이 매년, '17년, '18년, '19년 증가하기 때문에...

○ 김영선 의원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앞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길어서 제 시간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핵심만 말해 주십시오.

고액채납자 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액채납자는... 이것은 헌법에 나오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내년 2021년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표 6> 지방교부세 감면 및 인센티브 현황 : 18~20년 광역도 비교 (단위 : 백만원)			
광역시도	지방교부세인센티브(A)	지방교부세감액(B)	인센티브(A)-감액(B)
경북	250	1,141	-891
강원	580	1,112	-532
경기	560	839	-279
충북	0	0	0
제주	670	352	318
전남	655	147	508
충남	1,520	947	573
경남	1,050	263	787
전북	1,075	111	964

출처 : 지방재정 365, 경상북도 홈페이지 재정공시

지방교부세 감면 인센티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느냐 하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인센티브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이 자료 맞지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이것 몇 년도 자료신지, 제 자료하고 달라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2018년에서 '19년, '20년, 이렇게 3년치입니다. 이것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재정365를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행안부의 교부세과장 출신인데요. 우리 도는 교부세 금액이 '19년도에 10억이고 '20년도에 1억 2,200입니다.

○ 김영선 의원

지금 충분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재정건전성하고 효율성, 이것도 원래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을 보면 제일 문제가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그렇지요? 안 봐도 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김영선 의원

우리가 동종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데,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 재정건전성, 효율성, 경고에 노란 불이 많은데 녹색불이 들어오도록 기초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노력하는데 저것은 지방세입이 적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요, 계속 노란불이 들어와도?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세수가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당연히 저게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래서 동종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동종이 있고 전국 평균이 있잖아요. 전국 평균이 3.55, 동종, 잘 안 보이시지요? 동종보다도, 이것을 보셔야 압니까? 동종이 마이너스 0.24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73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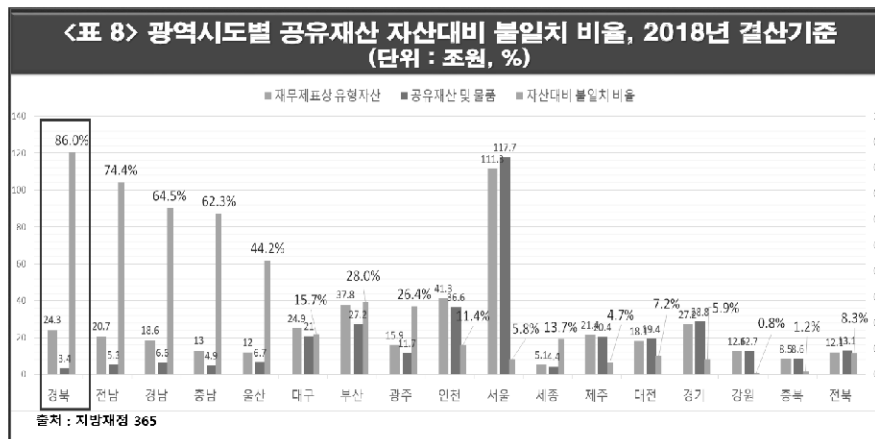
이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김영선 의원

공유재산, 혹시 저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 대장 간의 불일치율이 88.1%, 저희 경북이 이런 것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은...

○ 김영선 의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의원님, 이것을 기준이 다른 것을 비교하면 안 맞는 것이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대장은 기준이 다릅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습니다.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러면 기초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도유재산이 3조입니까? 24조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장으로 3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재산이 세종시보다도 적고 울산,

충북,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유재산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 김영선 의원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경상북도가 세종시보다도 적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유재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가치가, 대장 가격이 타 시·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무제표 대장 다르고 공유재산 대장 다르고, 이중장부 하셨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지요. 재무제표에는 거기에 건물비, 토지비 플러스 기타...

○ 김영선 의원

다 압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유재산에는 건물하고 토지비 이것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김영선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회계장부에 인식된 유형자산이 우리 도의 공유재산에서 축소 또는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리고 지금 전북, 충북, 강원, 경기 이쪽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경북만 8배가 차이가 납니다. 공유재산이 3조이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24조, 2019년 오면 26조입니다. 더 차이 납니다. 다른 데는 차이가 나도 그렇게까지 나지 않아요.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우리 회계부서에서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김영선 의원

무단사용하게 되면 변상금 징수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김영선 의원

그럼 무단사용하는 것 방치하는 것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방치하면 안 됩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런데 우리 도의 재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재무제표에는 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에 안 잡혔으니까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유재산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는지.

○ 김영선 의원

이것은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용역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경우에도 최근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현행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성을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IPCC에서 지구온난화 보고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즉 지구기온 상승온도를 1.5℃로 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어느 때보다 지금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경북발전 10대 분야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환경분야는 없습니다. 관광도 있고 아이 세상, 4차 산업,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

또 10대 분야 핵심과제 밑에 있는 경북발전 100대 과제 세부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79번에 하나 있습니다. 대기오염 걱정 없는 미세먼지 유발 차단사업, 그런데 이마저도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북만의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가기 급급하고 지사님께서서는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에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취임 이후에 환경국장이 몇 명이 교체됐는지 아시나요?

○ 도지사 이철우

제가 오고 난 다음에요?

○ 김영선 의원

예.

○ 도지사 이철우

환경국장이 세 번째인가...

○ 김영선 의원

4명입니다.

지사님께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도의 환경정책, 생각하시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방향, 혹은 비전을 짧게 한 문장으로 하신다 그러면 환경은 무엇무엇이다?

○ 도지사 이철우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 김영선 의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드는 것이 환경이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환경정책 성과를 2015년에서 2019년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표 11>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2015~2019년) 이행평가

구분	제안사업	추진	미추진	이행률 (%)
계	116	70	46	60
자연생태환경	8	7	1	87
환경보전	8	5	3	63
대기 및 기후변화	20	15	5	75
물 환경관리	55	29	26	53
자원순환 관리	25	14	11	56

출처 :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2020~2030)

특히 물, 세부사업은 지나가겠습니다, 바빠서. 물 환경관리 부문 살펴보니깐 55개 제안사업 중에 미추진사업이 26개로 53%만 이행되었습니다. 물 환경관리 부문 중 수질분야 성과가 특히 미흡합니다. 표에서 보듯 수계·수질관리 18개 사업에서 9개만 추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TMS 체계 운영 고도화, 폐금속 광산 관리 강화, 구제역 관련, 이런 것은 수질 오염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미추진된 것 중에서 혹시 구제역, 조류독감 사고, 이때 가축 살처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이때 지사님 오시기 전인데 혹시 그때 어느 정도 살처분 했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안동지역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 김영선 의원

그때 오시기 전이니까 숫자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한 45만 마리를 했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그런데 혹시 그러고 나서 매몰하고 난 다음에 지하수 오염 관리, 그런 어떤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늘 철저히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 김영선 의원

자료 받아봤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그러면 왜 미추진으로 해놓았습니까? 그냥 추진한 것으로 하시지.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때 의원님이 파악한 그 자료를 지금 다시 받아보니까 한 77% 정도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 김영선 의원

자, 지사님.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제가 환경, 이 질문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경상북도지사 사인이 있는 것이었는데, 저한테 보내온 자료하고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 김영선 의원

자,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요,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이걸 '19년도까지니까 '19년까지 자료를 보냈고,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을 보니까 90개가 되어서 77%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영선 의원

지사님, 집행부가 저한테 주는 자료하고 지사님한테 주는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까...

○ 김영선 의원

질의서를 받고 온 자료가 다른 겁니다. 이러면 집행부 신뢰 못 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게 환경보전계획이 2015년부터 '19년도까지니까 '19년도까지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

○ 김영선 의원

지사님, 저도 지금...

○도지사 이철우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얼른 질문해야 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수질오염 관련해서 우리 경북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지금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건 행정처분 중입니다, 그렇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20일 건 소송 중이고, 3개월 30일 건은, 이건 영풍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소송 진행했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이것 좀 경과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환경부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경상북도가 나서서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또 정부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고, 5월에는 정식으로 환경부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경과 맞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저는 이 정도면 경상북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풍 제련소를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 그 회사의 매출, 그리고 세수,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이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폐수가 공장

바닥에는 흘렸지만 공공수역으로 안 나갔는데 환경부 처사가 지나치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 도지사 이철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 김영선 의원

짧게, 그 두 가지에서 혹시 벗어나는 것 있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래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도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2018년 11월 달에 그 현장을 휴일에 저 혼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첫 느낌에 이 공장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이 1,373명인데 우리 경북 사람이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조업정지를 해놓은 것을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데 3개월 30일을 때리면 완전히 공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으면...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관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공장이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과거에 아연이 생산될 때, 광산이 있을 때 있었던 것을 광산이 지금 안 나오는데, 수입해서 하는데...

○ 김영선 의원

그렇게 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이것은 좀 도민들께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장관님도 회사 측하고 상의해서 이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추진을 좀 해달라. 그 대신에 3개월 30일을 때리는 것은 조금...

○ 김영선 의원

자,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건 또 다른 기회에 얘기하시고, 제가 보니까 어쨌거나 3개월 30일이 가혹하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 도지사 이철우

3개월 30일을 때리면 종업원들이 어디로 갑니까?

○ 김영선 의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딸린 식구들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지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봉화에 있는 주민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그 주민들, 그리고 협력업체, 그걸 생각하니까 3개월 30일이 지나치다 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청문회하고, 그리고 소송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때 법제처에 질의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비록 사업장 외부 유출이 없다고 하지만 배관을 만들어서 폐수를 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이것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 도지사 이철우

아, 그럼요.

○ 김영선 의원

어쨌거나 그런데도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게 참, 이젠 좀 지나쳤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은...

○ 김영선 의원

이제 중앙정부가...

○ 도지사 이철우

강제 명령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 도지사 이철우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강제 명령을 하라니까, 그것은 제도상 대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총리실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선 의원

예, 행정조정 협의도 신청해 놓고 소송도 제기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행정력을 굉장히 그쪽에 집중하셨는데, 영풍 말고도 신경을 써야 할 환경이 많은데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아니, 영풍만 그런 게 아니고...

○ 김영선 의원

아니, 저는 한다고요.

○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 김영선 의원

왜냐하면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중앙정부에 맞서는 것 같은... 자, 만약에 지사님.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만약에 경상북도가 우리 각 시·군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시·군이 못마땅한 것 같아서 우리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 도지사 이철우

아니, 법과 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래서 저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게...

○ 도지사 이철우

중앙부처의 장관님들이 저한테 그래도 오해 전혀 없습니다.

○ 김영선 의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낭비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행정조정협의회에서 이번에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그대로 따를 겁니까?

○ 도지사 이철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정 결과는 안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면 소송도 취하합니까?

○ 도지사 이철우

소송은 취하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효능이 없는 것이지요.

○ 김영선 의원

예, 하여간 잘 좀 생각하십시오.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이니깐요. 지금 경제 분야가 아니니까, 환경이니깐요.

○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 김영선 의원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보니까 중금속 오염에,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상류에 있으면서 그 물을 먹는 1,100만의 영남민들도 생각 좀 해 주시라, 경제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선 의원

아니, 제가... 다 돼 갑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아니, 15분이나 남았는데 뭘 그렇게...

○ 김영선 의원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냐하면,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까...

○ 김영선 의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합시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 14>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2015~2019년) 대기 및 기후변화 성과 평가			
구분	추진여부	구분	추진여부
지독스 미니 설치	추진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미추진
지역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미추진	집단에너지 활용을 통한 지역냉방시스템 확대보급	미추진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추진	녹재열 및 이용 확대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체계적 관리	추진	녹색명품 신청서 간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추진
배출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사업	추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대기오염측정망 증설	추진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충	추진
그린카 보급 확대	미추진	신원자원 부호이광 강화	추진
천연가스 자동차(NGV) 보급 확대	추진	그린스쿨 및 복지시설 조성	추진
친기차능력 보급 및 중진 인프라 구축	추진	저탄소자립순환농업실천 및 폐기물바이오 가스 자원화 사업	추진
특정 경유차 관리 사업	추진	탄소중립순환마을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미추진

출처 :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2020~2030)

〈표 15〉2017년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단위 : 톤)

순위	시도	초미세먼지(PM2.5)	순위	시도	일산화탄소(CO)
1	경상북도	19,738	1	경기도	128,925
2	충청남도	16,021	2	경상북도	95,299
3	전라남도	11,272	3	전라남도	67,863
4	경기도	10,386	4	충청남도	67,215
5	경상남도	4,937	5	서울특별시	56,994
6	강원도	4,114	6	경상남도	52,202
7	충청북도	3,733	7	강원도	50,486
8	전라북도	3,537	8	인천광역시	47,228
9	인천광역시	3,131	9	전라북도	45,930
10	서울특별시	2,926	10	충청북도	45,204
11	부산광역시	2,617	11	울산광역시	31,218
12	대전광역시	2,229	12	부산광역시	26,433
13	대구광역시	1,267	13	대구광역시	18,335
14	제주특별자치도	1,054	14	제주특별자치도	11,710
15	광주광역시	645	15	대전광역시	11,307
16	대전광역시	619	16	광주광역시	9,371
17	세종특별자치시	368	17	세종특별자치시	5,087

출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표 16〉2017년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단위 : 톤)

순위	시도	질소산화물(NOx)	순위	시도	황산화물(SOx)
1	경기도	184,239	1	충청남도	69,905
2	충청남도	112,876	2	전라남도	56,844
3	전라남도	103,750	3	울산광역시	46,018
4	경상북도	102,251	4	경상북도	35,573
5	강원도	86,041	5	경상남도	26,860
6	경상남도	84,338	6	강원도	14,124
7	서울특별시	77,096	7	인천광역시	13,302
8	충청북도	67,614	8	경기도	10,011
9	인천광역시	61,522	9	부산광역시	9,526
10	부산광역시	51,870	10	충청북도	8,532
11	대전광역시	48,630	11	전라북도	5,526
12	전라북도	39,672	12	대구광역시	3,489
13	대전광역시	27,198	13	제주특별자치도	2,044
14	제주특별자치도	17,037	14	서울특별시	1,493
15	대전광역시	15,694	15	대전광역시	702
16	광주광역시	13,864	16	광주광역시	222
17	세종특별자치시	5,556	17	세종특별자치시	84

출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에서 대기 및 기후변화 성과평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깐 이것은 좀 수질보다는 많이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체계적 관리하고, 굴뚝 자동측정기하고, 오염측정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몇 등이던가요?

○ 도지사 이철우

질문하는 것 보고 그때 느꼈습니다, 예.

○ 김영선 의원

우리가 좀 초미세먼지 배출량 1위, 미세먼지 배출량 1위, 일산화탄소 2위, 질소산화물 4위, 황산화물 4위로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이제 아까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관리하고 굴뚝·오염측정망 다 사업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라 그러면 사업을 잘못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도지사 이철우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통계가 포항·경주·경산·김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염물질이 많은 곳을 통계를 냈는데, 안동이나 봉화나 이런 데를 통계낸 게 아니고 그런 지역만 통계를 딱 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공장이 있는 지역에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항제철소가 있고 이래서 좀 심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분야는 아까 말한 질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이것은 평균치고요. 미세먼지가 좀 우리가...

○ 김영선 의원

지사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이긴 한데 사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제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 한 80% 차지하고 군 단위에서는 봉화, 이렇게 몇 개만 관리하면 경북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 도지사 이철우

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포항하고 경산·구미 여기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요.

○ 김영선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만 한 것은 아니고 다 했는데 거기가 특히 많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하지요, 예.

○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좀 빨리빨리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북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충남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7%까지 확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경남 창원 경우는 한국형 뉴딜 스마트그린산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 BMW 등 글로벌기업은 이제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납품받겠다는, 소위 RE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RE100 아시죠?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좀 시간은 촉박하지만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좀 짧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린뉴딜 정책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시대 흐름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북에는 구미·포항 등의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 이런 산단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산단 자체를 그린에너지산단 기반을 조성해야 대기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이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게 좀 너무 크다, 기존의 것을 바꾸기 힘들다, 작게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 살고 있는 상주에도 청리마공단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정한 도시 상주에서 청정한 에너지단지를 하면 경제도 살리고 저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대규모 산단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규모, 이렇게 작은 데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대규모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단은 좀 작은 곳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만 우리나라가 가능한지 그것은 진짜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만큼 청정 에너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에 태양광이나 수력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풍력이나.

○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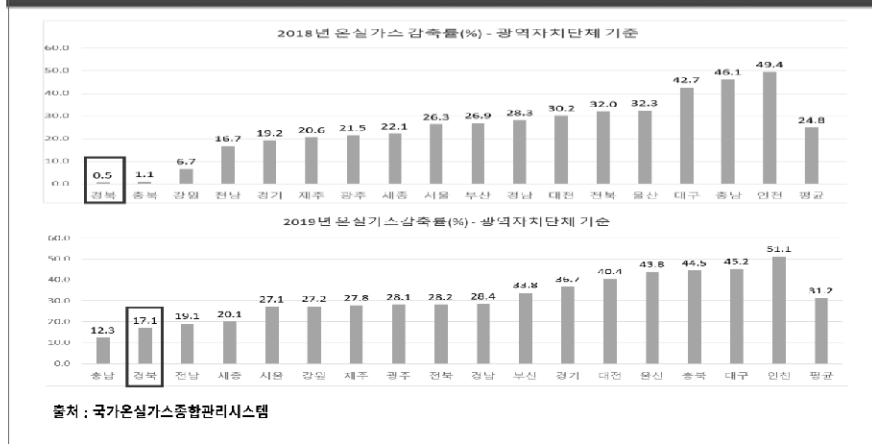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원전이 많으니까 수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또 하실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원전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사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 17〉 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률 : 2018~2019년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780개 기관에 대해서 매년 기준 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하고 있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우리 도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알고 계시죠? 2018년에는 0.5%밖에 안 됐고 그나마 2019년에는 좀 올라와서 17.1%가 됐습니다. 저게 좀 많이 한 데는 49%까지 또 50%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쪽 부분에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 도지사 이철우

올해 목표는 30% 잡았는데요, 현재까지는 30% 목표의 84% 정도.

○ 김영선 의원

30의 84%?

○ 도지사 이철우

예, 그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선도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처지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선도적으로 가도록 좀 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또 하나 우리 아까... 조금 순서는 그렇습시다마는 기후 환경, 기후변화 대응, 이 얘기할 때 우리 도의 환경산림자원국을 보니까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맑은물정책과 그리고 산림과 2개나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17개 광역시·도를 보니까 거의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 관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산림자원국을 보니까 인력도 줄고,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점점 농사짓기도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홍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돼서 이 부서의 신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표 18〉 전국 광역 시도 환경관련 실국 현황

시도	환경 관련 조직도	기후 및 대기 관련 과 유무
서울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
부산	기후대기과, * 물정책국 별도 구성	○
대구	녹색환경국: 기후대기과	○
인천	환경국 : 대기보전과	○
광주	환경생태국 : 기후대기과	○
대전	환경녹지국 : 기후환경정책과	○
울산	환경국	×
세종	환경녹지국	×
경기	환경국 : 기후에너지과	○
강원	녹색국	×
충북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충남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정책과	○
전북	환경녹지국	×
전남	환경산림국 : 기후생태과	○
경북	환경산림자원국	×
경남	환경산림국 : 기후대기과	○
제주	환경보전국	×

○ 도지사 이철우

예, 안 그래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기후 관련해서 팀을 신설하도록... 과를 신설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팀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과로 하기는 어렵고요?

○ 도지사 이철우

과로 하기에는 이 규모 봤을 때 그 정도는 어려우니까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우선의...

○ 김영선 의원

그 정도 가지고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신공항 이런 것 신경 쓰는 것, 제가 서두에 얘기드렸지만 지금은 시대의 이슈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이런 것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환경 정책이 어떤지 도민들이 손쉽게 보려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영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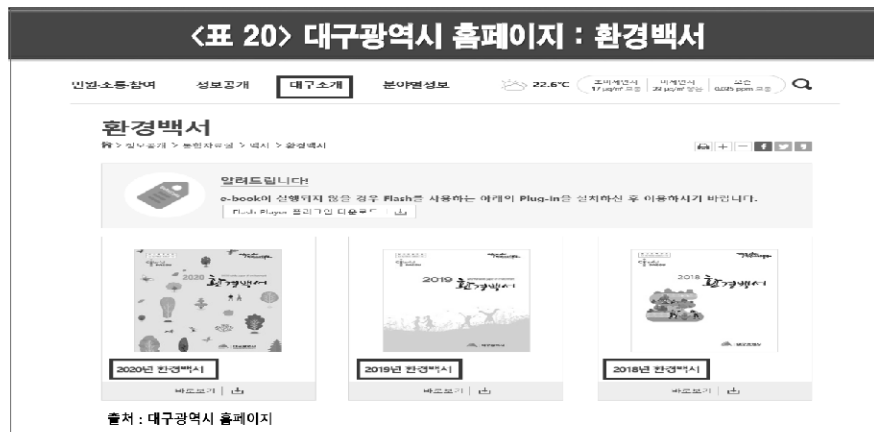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듣기는 했는데, 우리 도의 환경 정책을 알리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환경조례를 보면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서 환경백서 보신 적 없으시죠?

○ 도지사 이철우

아까 같이 봤는데 9월 29일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 김영선 의원

예. 저도 그것 보니까, 환경백서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2005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는 의외로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백서도 되어 있고, 탁탁 누르면 1장씩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또 잘 돼 있는 게 환경 코너를 들어가면... 마침 뜨는데, 오늘 실시간 정보를 줍니다. 오늘 대기질이 어떤지, 미세먼지가 어떤지 딱 누르면 내가 사는 동네가 어느 정도인지 뜹니다. 그리고 수질, 상수도, 내가 먹고 있는 상수도가 어느 정도 되지? 딱 누르면 뜹니다. 또 자원 재활용 이것 어떻게 하지? 폐기물 관련 견학도 하고.

옆에 있는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호홉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환경 분야를 이렇게 치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이철우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재난실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분야에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없어요.

○ 도지사 이철우

예, 그것 바꾸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바꾸십시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 22> 경상북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세바퀴 경북! 경상북도

전자원	정보공개	행정정보	소통참여	도정소식	경북소개	분야별정보
대한/계정/계좌	· 소수	· 세습	· 재정정보	· 계약정보공개		
농업/수산	· 소수	· 농수산	· 농업경영시스템	· 수산물안전관리	· 농업안전관리	· 삼각산농업진흥
산업	· 소수	· 산업안전	· 산업자원개발	· 산업안전관리	· 수목관리	· 발전소안전관리
학술/수난	· 소수	· 해양수산	· 이력관리	· 수산자원관리	· 해양수산개발	
여유/문화/복지	· 소수	· 고도19	· 보건관리	· 이력관리	· 이력관리	· 교육
문화/관광/행사	· 소수	· 문화관광	· 노년개발	· 문화	· 농림수산	· 관광진흥
재난/안전	· 소수	· 소개	· 기상정보	· 안전정보	· 환경관리	· 재난안전관리
산업/경제/복지	· 소수	· 중소기업지원	· 산업정보	· 부동산	· 사회경제개발	· 중소기업진흥
생활환경/에너지	· DATAS	· OPEN API	· 임대차	· 고령친화	· 공공데이터포털	· 소개
시정정보	· 시정정보	· 나기시정정보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영상기록물	· 영상기록물	· 사진기록물	· 영상기록물	· 기록관리		
투자유치	· 투자유치	· 투자유치	· 산업단지	· 기업애	· 인력	· 경제

출처 : 경상북도 홈페이지

○도지사 이철우

예. 그런데 의원님, 도하고 대구시하고 좀 다른 차이가 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시·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대구시는 대구시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석포제련소 말씀도, 의원님이나 도민들이랑 환경단체 오해가 있으니까.

○ 김영선 의원

예, 하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제가 석포제련소 사주의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현장에 가보고 이것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한테 제가 깊숙이 논의한 것은 어떻게든지 당신들이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 이 벌칙을 주기 전에 벌칙만 자꾸 줘 가지고 문을 임시 닫으면 그 종업원들만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소송을 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해 본 사람이 정부하고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것은 아니고, 이 1차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2차는 이 사람이 방호벽을 쳐놨는데 밖으로는 하나도 안 나갔다. 그리고 현지 실사를 갔다 온 교수도 봤을 때 이것은 감경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충분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문제가 포스코에서 생겼는데

브리더 개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서 열흘 정지를 하라고 하니, 고로를 열흘 끄면 다섯 달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광양하고 현대제철하고 똑같이 세 군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역 지사님들은 “열흘 다 명령을 나는 못 하겠다.” 왜, 청문을 해 보니까 기술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환경부에서 “외국에 가봐라.” 그래서 독일, 미국 가보니까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기술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업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문제를 우리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알겠는데요...

○ 도지사 이철우

그 대신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환경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책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선 의원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지사님께서 경제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

○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 김영선 의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발 시대의 지사님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요.

○ 도지사 이철우

아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는 개발 시대 그런 것 아닙니다.

○ 김영선 의원

그리고 진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만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서운합니까? 왜냐, 우리는 조업 정지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도 조업정지했잖아요. 시설 폐쇄도 아니고, 폐업 명령도 아니고, 조업정지인데 그것도 못 시키면서 이 회사를 옮겨달라 이러면 내 할 도리는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도지사 이철우

아니요, 그것은...

○ 김영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도지사 이철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합니다.

○ 김영선 의원

그리고 소송이 또 남았잖아요.

○ 도지사 이철우

소송은 효과가 없습니다.

○ 김영선 의원

그리고 어쨌든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사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간 시간이 촉박해서 어수선하긴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VI. 5분 자유발언

□ 2020년 10월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변경 촉구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라 천년의 고도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경상북도를 선도하는 중심도시 경주의 도심 최고 고도지구 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주 도심 성건동에 위치한 보우주택과 성건주공아파트 및 주공연립아파트는 각각 1979년, 1980년에 건립되어 현재 748세대 2,000여 명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경주 시내를 관통하는 형산강이 좌우로 흐르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및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인접하여 있어서 주거 입지조건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입지조건에 반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위태롭고 비참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어진 지 올해 40년이 지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 강도 5.8 경주지진 당시의 균열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 저기 땀뻥식 보수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주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 허용고도는 보우주택의 경우 20m, 성건주공아파트의 경우 25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문화도시,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경주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1990년대부터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최고고도 지구 변경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에 주민의 탄원서, 설명서, 서명지를 들고 수십 차례 방문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방문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문화재위원을 경주에 초청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결 같았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워 한 번도 경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민의 요구사항은 매우 소박하면서도 합리적입니다. 역사와 문화재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를 파헤치거나 빌딩숲을 조성하여 경관을 해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경주역 광장의 표고 45m를 고려해서 현재 20m, 25m로 묶여 있는 사업성이 없는 최고고도를 36m로 완화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40년 전에 정해진 고도제한을 변화된 시대상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유린되고 무시된 경주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권, 행복추구권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덤이라고 합니다. 경주는 죽은 자들의 도시가 아닙니다.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공유하고 복원과 재창조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그런 경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은 ‘변해야 산다!’는 도정슬로건과 함께 낡은 관행타파와 규제해소에 적극 나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를 해소해서 경주시민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7만 경주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경주 출신 최병준, 박승직, 박차양, 그리고 저를 포함한 4명의 도의원이 요구하는 경주 최고고도지구 변경 요구안과 지역주민들의 서명지를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0월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대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철도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철도는 21세기 친환경 교통물류수단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철도 인프라 확충은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철도의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170여 건의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10월 도내 철도인프라 부족 해소와 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해 20개의 현안철도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현안철도망 중 특히 점촌~신도청~안동 간 54.4km 구간의 단선철도 건설사업이 도내 다른 어떤 노선계획보다도 시급하고 그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촌~안동선은 우리 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중부내륙철도, 즉 서울수서~이천~충주~점촌~김천~거제를 잇는 노선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수서에서 출발한 열차가 점촌에서 김천, 거제로 가거나 혹은 예천, 신도청, 안동으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촌~안동선은 사실상 서울수서에서 이곳 신도청을 거쳐 안동으로 이어지는 직통노선인 것입니다.

경북에서도 여러 노선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점촌~안동선이 가장 시급하고 의미가 큰 것은 바로 신도청을 지나는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도청을 지나는 철도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안동은 5대 관광거점도시로서 경북 북부지방에서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인구도 가장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중앙선 철도와 새로 건설될 중부내륙선을 횡단으로 연결 한다는 의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기 구간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2,680억 원에 달하며, 특히 도청신도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 경북의 수도로 건설 중이나 4년이 지난 지금도 2만 명이 채 되지 않으며 2단계·3단계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 되지 않고 있는 등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도로망이 불편하고 철도가 없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만큼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검토를 넘어 반드시 사업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점촌~안동선이 확정된다면 지난 8월 이전부지가 확정된 통합 신공항에서 이곳 신도청까지 철도를 연결하자는 계획도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즉 이곳 신도청이 서울수서까지도 직통으로, 그리고 신공항과 대구까지도 열차로 연결되어 행정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에서도 경북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할 역할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점촌~신도청~안동, 나아가 신도청~통합 신공항까지의 철도망 구축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0월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진, 화재, 건물붕괴 등 위험한 재난사고 시 누구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뒷걸음질 칠 때 재난현장으로 달려오는 이들은 바로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은 각종 재난구급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동안 열악했던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경북소방의 인력, 예산, 장비 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력은 2010년 2,500여 명에서 2020년 5,1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되었고, 예산은 1,600여억 원에서 4,600여억 원으로 3,000여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비는 629

대에서 932대로 48% 이상 보장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사님을 비롯한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 등 내적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소방청의 전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7회에 달하고 28.3%가 알코올 장애를, 23.1%가 수면장애를, 4.5%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소방관이 10.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이 56명으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23명보다도 두 배가 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의 확대·설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심신안정실 설치대상 101개소 중 16개소만이 설치되어 15.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 51.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제주도 심신안정실을 100% 설치하여 소방관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건강 유지와 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지원비도 2019년 서울시가 1인당 지원예산을 26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광주시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10년이 넘게 20만 원에 불과하다가 지난해 25만 원으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소방안전센터 등에 심신안정실 100% 설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순회교육, 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특수건강지원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조직, 인사, 예산에서 기존 경북도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경북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0월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영주댐 방류 철회 구축》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어디에 계십니까?

영주댐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방류를 제발 막아 주십시오.

영주댐은 지난 2009년도 내성천 수질개선, 홍수피해 경감, 영주·안동·예천·상주 등 인근 4개 시·군의 각종 용수공급 및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한 다목적댐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1조 1,030억 원을 들여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에도 영주시민들은 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격렬히 반대하였으나 대책사업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삶의 터전과 살아온 역사를 몽땅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모두 내어 준 영주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없이 2016년 본 댐 건설을 완성하여 놓고도 전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상태로 3년여 동안 홍물로 방치하다가 영주시민

들의 지속적인 담수 요구에 2019년 9월에 이르러서야 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주시민들은 늦었지만 이제야 댐이 제 역할을 하게 됐다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는 얼마 안 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환경부에서 2020년 10월 15일 11시부터 영주댐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영주댐협의체의 결정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영주시민들은 분노하며 영주댐방류저지수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주댐 방류 저지 투쟁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청와대·환경부를 잇달아 항의방문하고 10월 5일부터 댐 수문 아래에 수문이 열리면 떠내려가겠다는 각오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 도민의 고통과 아픔, 영주시민의 절규와 염원을 귀담아듣고 함께해 주십시오.

첫째,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계획을 막아주십시오.

영주댐의 방류 여부는 담수를 통한 안정성 평가와 수질 및 생태계,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댐 건설에 1조 1,000억이 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댐 건설계획에 따라 현재 영주댐 주변에는 오토캠핑장, 용마루공원, 전통문화체험단지, 복합어드벤처타워, 스포츠комплек스 등이 조성되어 지역관광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의 방류 결정에 따라 이제까지 투입된 1,747

억 원의 사업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현재의 영주댐협의체를 해산하고 경북도민과 영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영주댐협의체를 새로이 구성하여 주십시오.

셋째, 경상북도에서도 영주댐과 관련이 있는 시·군 기관 등과 함께 영주댐방류저지대책위원회 또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에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환경부가 내린 영주댐 방류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영주댐이 건설목적에 맞게 준공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과 영주시민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시 한번 영주댐 방류 중지와 조기준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26건)	149
□ 동 의 안(13건)	335
□ 승 인 안(1건)	361
□ 결 의 안(1건)	365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우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9. 22)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9. 22)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9. 22)
-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영선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20. 9. 22)
-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9. 22)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조 의원('20. 9. 22)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영길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영숙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곽경호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영선 의원('20. 9. 25)
-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주홍 의원('20. 9. 22)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열 의원('20. 9. 22)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근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배진석 의원('20. 9. 25)
-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김준열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환 의원('20. 9. 25)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준열 의원('20. 9. 25)
-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감('20. 9. 22)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상조 의원('20. 9. 22)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남영숙 의원('20. 9. 25)
-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경 의원('20. 9. 25)
-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박채아 의원('20. 9. 25)
-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하수 의원('20. 9. 25)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20. 10. 6)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감사”를
“감사”로 하고,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를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로, “의하여 행한다”를
“따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도”를 “도 및 교육청”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다”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조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휴회중일”을 “휴회 중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도의 소속 행정기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4. 법 제146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
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도 및 교육청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에서 필
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원(포항·김천·안동)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를 “도 및 교육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중”을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와 교육청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나 서류제출,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자가증인으로서”를 “사람이 증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3.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중 “대상현장이나 기타의”를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할수”를 “할 수”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제16조 중 “경상북도의회회의 규칙”을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 서(기관장)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선 서(증인)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
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
조의2에 따라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감사) ① 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	<u>제2조(감사)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감사----- ----- -----<u>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u>----- ----- ----- -----<u>따라 실시한다.</u>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u>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u>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u> ② 제 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u>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경상북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u>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u> 제3조(조사) ① -----3분의 1 이상----- -----<u>도 및 교육청</u> -----<u>행정사무</u> <u>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u>조사</u>----- ----- -----.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u>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u>

현행	개정안
<u>하면 본의회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u>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략) <u>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u>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경상북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u>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u> ④ ----- 휴회 중일 ----- ----- 따라 ----- -----. ⑤ ~ ⑦ (현행과 같음) <u>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u>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도의 소속 행정기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 행정기관 4. 법 제146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

현행	개정안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경상북도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경상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포항·김천·안동)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도 및 교육청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원(포항·김천·안동)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생략)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제출, 도지사,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도 및 교육청-----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와 교육청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나 서류제출,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인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u>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현행	개정안
<u>의장의 통보등으로 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생략)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u>자가증인</u>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생략)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2”의 등급제3호를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u>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제9조의2(증인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람이</u> 증인으로서-----.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현행	개정안
2. <신설>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별표1” 제4호 및 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제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3.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u>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u> 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① (생략)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u>아니된다</u>.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 ② (생략)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2.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3.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 ----- -----<u>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u> -----. 제13조(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아니 된다</u>.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할 수 -----.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은 제 2항에 따라 ----- -----.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경상북도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 ----- -----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
제17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경상북도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경상 북도의회 회의규칙」-----.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회 재 난 과	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2.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82조	시장·군수
중소벤처기업과 에너지산업과 공통 중소벤처기업과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군수
민 생 경 제 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 갱신, 등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 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 2조의4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타.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및 판매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 통보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공급실적 신고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 기관 추가개설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마. 조합 해산 신고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8조제4항	시장· 군수
사 회 적 경 제 과	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 ·징수 바. 신고필증 교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장· 군수
교 통 정 책 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 에 대한 보고검사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시장· 군수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철곡 군수를 말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제6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시장·군수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 군수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 군수를 말한다)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	
	28.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시행규칙 제8조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 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8조제5항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3조2항(같은 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94조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사업면허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마. 시설사용료 인가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설비의 시정 명령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인가와 변경 신고 수리 아. 개선명령 자. 사용명령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 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타. 상속신고수리 파. 휴업·폐업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하. 보고·검사 등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 처분 등 나. 청문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러. 과태료 부과·징수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등록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 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 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제13조제7항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시장· 군수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 군수를 말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 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리 아. 상속 신고수리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 허가, 신고수리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타. 차령연장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 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하. 청문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2조 및 제6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 1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 1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사. 차령연장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카. 과태료부과·징수 43.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44.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45.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4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47.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나. 보고·검사 등 48.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 협의회의 설치·운영 49.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관련 보고· 검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 항제7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제61조제1항	시장· 군수
외 교 통 상 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의 여행 허가	「공무국의여행규정」 제3조 제1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외 교 통 상 과	2.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시장· 군수
자 치 행 정 과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 2항	시장· 군수
회 계 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도 분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 군수
문 화 예 술 과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1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 화 산 업 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1.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2.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 증 갱신교부 3.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 말소 4.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정지명령, 시정 조치 및 경고조치 5.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 의 수거·폐기 6. 청문 7. 수수료 8. 과태료의 부과·징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장· 군수
농 업 정 책 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시의 허가·협의 처분 건)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 군수
농 식 품 유 통 과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2. 시료 수거 등 3.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4.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123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친 환경 농 업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 군수
농 촌 활 력 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 군수
축 산 정 책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축산법」 제8조제1항 「축산법」 제11조	시장· 군수
동 물 방 역 과	1.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감독 2.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 고서 청구 3.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	시장· 군수
환 경 정 책 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 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 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제 7호는 도에서도 병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 1항제7호·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 4항제5호·제6호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다음 사항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중요사항 변경을 포함 한다)의 제출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등 4)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5)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기간 연장 6)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 부여 7) 폐기물 재위탁 승인 8)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9)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취소(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등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신고 및 검사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대상자 선발, 통지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59조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 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 명령, 폐기물처리 금지 명령), 감경, 채납 처분 등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치수 시설 인정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 결과 보고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 영향 조사 결과 보고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신청 접수·수리, 권리자에 통보 등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 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 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항·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 22조 및 제23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양수·인수·합병 등 경우 허가, 관계기관 협조 등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 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 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니.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반입재개 신청 접수 및 통보 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제8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및 제66조, 별표 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제1항 및 별표 제5의3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같은 법 제39조의2 및 3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같은 법 제47조의2 같은법 제66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시장· 군수
	10.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 관리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 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 시설 관리허가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 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 료의 징수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자. 금지행위의 단속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7조	시장· 군수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카. 자연자원의 조사 다.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하. 대집행 거. 사범경찰관리의 지명 제청 너. 허가에 관한 협의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버. 주민지원사업 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 종료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 (변경승인), 승인 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예외인정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 1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3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바. 과징금의 처분 등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 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 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 수령 등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리. 청문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 활용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인정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같은 법 제41조·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같은 법 제43조·제45조 같은 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서. 과태료 부과·징수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 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4.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가. 고형연료제품공급 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연료 제품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 하는 업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시장· 군수
환경 안전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다만, 동일 사업 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 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차. 과징금 부과 카.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및 제35조 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제3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 연료 사용의 승인 등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10.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 위자에 대한 방제 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11.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12.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13.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 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1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 15.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45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82조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안전과	1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라. 청문 마. 파태료의 부과·징수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시장· 군수
맑은물 정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 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시장· 군수
산림 자원과	1. 산림기술자 배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원의 배치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산림보호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림 자 원 과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 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 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사. 복구의 대집행 등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징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13조의3 같은 법 제13조의4 같은 법 제13조의5 같은 법 제13조의6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 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립 자 원 과	다.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나. 산림사업법인의 지정 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 8.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 취소 나. 독립가(자영독립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시장· 군수
산림산업 관 광 과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 제3조	시장· 군수
아이세상 지 원 과 여성가족 행 복 과 사 회 복 지 과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애 인 복 지 과 보 건 정 책 과 공동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52조제1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 건 정 책 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 군수
식 품 의 약 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중 갱신·재발급, 반납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 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 재교부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 개업 신고 9. 마약류의 사고보고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약사법」 제31조제5항 「약사법」 제45조제1항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및 제103조 「약사법」(법률 제1491호) 부칙 제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9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카. 법 제13조의4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변경 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 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0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주요 유치 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중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사. 산업단지구조조도화에 관한 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시장·군수 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3. 대도시에 대한 특별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포항시·영일만, 영일만2)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라. 산업단지의 전환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인가·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의뢰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인가광고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1호 「지방자치법」 제17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 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청문 및 고시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정한다)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한다) 라. 주차장 마. 궤도 바. 시장 사. 공공청사 아. 수도공급설비 자. 하수도 차. 도축장 카. 방풍설비 타. 사방설비 파. 방화설비 하. 방조설비 거. 연구시설 너. 문화시설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더. 사회복지시설 러. 공공직업훈련시설 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버. 광장(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 상 도로관리청이 시장 ·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으로 한정한다) 서. 하천(「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으로 한다) 어. 공공공지 저. 전기공급설비 처. 장사시설 커. 저수지 터. 가스공급설비 퍼. 방수설비 허. 유수지 고. 폐차장 노. 청소년수련시설 도.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모. 자동차정류장 보. 열공급설비 소. 방송·통신시설 오. 공동구 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초. 종합의료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결정 및 고시 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를 포함한다)· 고시· 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10.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 완료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11. 도시개발구역과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1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13.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1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15.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 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제48조, 제88조제9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같은 법 제98조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7. 선수금 승인 18.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19.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2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 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21.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22.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23.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2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25.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26.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27.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28. 청문 실시 29.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 30.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제17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용도 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한다) 3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3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계획인가(시장·군수 시행 사업을 제외한다) 및 변경 인가 3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 완료보고, 공고 3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37. 감독 및 감사 등 38.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330만㎡ 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39.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공기관 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40. 선수금의 수령 및 채권 발행 승인 41. 감독(지정 또는 승인 취소는 제외한다) 42.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도시개발법」 (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 (법률 제 685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 5904호) 제47조 및 제55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76조의2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 장관 관리 도로는 제외한다) 2. 권한의 위임·위탁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4. 공익을 위한 처분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2. 건설기계 등록 등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4. 등록의 말소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 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 까지,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및 제74조 같은 법 제11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8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도로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다. 협의 라. 계약의 체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 18. 미불용지의 평가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 번호표 재부착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21. 등록번호표 반납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 명령 등 23. 건설기계의 폐기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 검사 등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27. 원인자 부담금 28. 수수료의 징수 29. 과오납금 반환 30. 변상금의 징수 31. 과태료 32.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도유재산(행정, 일반) 의 실태조사 나.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33. 건설기계 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44조 「도로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제2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시장· 군수
건 축 디자인과	1.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 신고서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다음 권한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 ·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주택법」 제24조 같은 법 제1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 조의2제1호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천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 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제외한다)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를 포함한다) 취입보, 하천 복개는 제외한다) 및 고시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 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및 감면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 서의 행위 제한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 사항조치명령 권한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및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과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17.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 업무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한정한다 25.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변경계획 수립 26.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청구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다. 보상금액의 산정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제84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 산업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업자 선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전기사업법」 제7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 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 조의2	시장· 군수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 군수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4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 사 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의 사업소 내 전보권(본소와 지소 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사업소장
동 물 방 역 과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장을 포함한다)
환 경 정 책 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팔공산도립 공원구역에 한정한다) 1. 공원구역 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2.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3.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 허가 4.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5. 공원구역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 조치 6. 금지행위의 단속 7.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자연자원의 조사 10.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징수 허가 11.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12. 부당이득금의 징수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팔공산도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13.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14. 대집행 15.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6. 허가에 관한 협의 17.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 공원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9.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0. 주민지원사업 21.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22.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및 제 72조 같은 법 제17조의3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팔공산도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도로 철도과	1.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2. 도로표지 정비 3.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 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법」 제52조 「도로법」 제5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북부건설사업 소장, 남부건설사업 소장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5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투 자 유 치 실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관 광 정 책 과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 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 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체 육 진 흥 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 인의 제한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바. 지정명령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체 육 진 흥 과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 명령, 영업정지 자. 청문 실시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정 책 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1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안 전 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 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 명령 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 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 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 항제5호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 항제6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 항제7호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 항제8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 항제9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안 전 과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 타. 사업자의 자기측정 결과 보고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 증명서 발급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 신고 수리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제63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2항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9조 같은 법 제44조제7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45조제4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안 전 과	마.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 바. 청문 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 나. 청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2호·제13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4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보 건 정 책 과	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의료보수의 신고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식 품 의 약 과	1.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식 품 의 약 과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 자가 된 때 및 범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인수신고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출입·점사와 수거 거. 폐기 명령 등 너. 업무보고 등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리. 청문 머. 과징금 처분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수리 다. 보고 지시와 검사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마. 폐기 명령 등 바. 검사명령 사. 개수명령 자.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 무정지 명령 차. 청문 카. 약사감시원 등 임명 타. 허가증 갱신 파. 과징금 부과·징수 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제1 항, 제2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제1항 부터 제3항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고시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한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같은 법 제9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소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자. 선수금 승인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어. 청문 실시 5.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나.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전환 및 고시 다. 실시계획 협의, 승인 및 고시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제3항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8조제1·3·4항 같은 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준공인가 및 공고 사.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 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협의 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차.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 파. 산업단지계획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6. 기초조사의 실시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8.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 단지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권자 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및 설립 인가 취소 다. 관리업무의 위임·위탁 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승인, 고시 및 운영 마. 입주계약의 체결 및 해지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사.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1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6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5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33조의2제3항 같은 법 제38조, 제42조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5조제3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 축 디자인과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승인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협의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 실보상 라. 주택의 감리 등 마.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의3 같은 법 제2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토 지 정 보 과	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나. 지정공부의 반출 승인 다. 지정공부의 복구 라. 도면의 재작성 승인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바. 축척변경의 승인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자.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에 너 지 산 업 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 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 산업과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 명령, 확인·평가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 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 승인, 해임요구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 명령, 시설 등의 봉인 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 카.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타. 청문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해업의 신고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4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 산업과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30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 채취	같은 법 제38조	
	아. 청문	같은 법 제40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9조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33조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 채취	같은 법 제38조	
	마. 청문	같은 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같은 법 제9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제4항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3항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15조제6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 산업과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자. 완성검사 차. 임시사용 허가 카. 용기 등의 검사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파. 위해 방지조치 등 하. 청문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 제대리점 및 부생 연료유판 매소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 무중 석유판매 업자가 판매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의 공표	같은 법 제15조제7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5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7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권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권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	⋮	⋮	⋮
중소벤처기업과	1. (생략)	(생략)	시장·군수	중소벤처기업과 <u>에너지산업과</u>	1. (현행과 같음) - 에너지산업과와 공동 -	(현행과 같음)	시장·군수
⋮	⋮	⋮	⋮	⋮	⋮	⋮	⋮
외교통상과	1. (생략) (신설)	(생략)	시장·군수	외교통상과	1. (현행과 같음) 2. <u>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문</u> 가. 수입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나. 지정명칭 및 과정금 부과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다. <u>과태료의 부과·경수</u>	(현행과 같음)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3호, 제4항	시장·군수
⋮	⋮	⋮	⋮	⋮	⋮	⋮	⋮
환경정책과	1. ~ 7. (생략) 8. (생략) 가. (생략) 1) ~ 2) (생략)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4) ~ 9) (생략) (신설) 나. ~ 나. (생략)	(생략) (생략)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생략)	시장·군수	환경정책과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등 4) ~ 9) (현행과 같음) <u>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u> 나.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시장·군수

현행				개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권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권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정책과	(신설) 9. ~ 10. (생략) 11. (생략) 가. ~ 버.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생략)		환경정책과	다. 파태료 부과·징수 9. ~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 ~ 버. (현행과 같음) 서. 파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	⋮	⋮	⋮	⋮	⋮	⋮	⋮
환경안전과	1. (생략) 2. (생략) 가. ~ 차. (생략) (신설) 3. ~ 15.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시장·군수	환경안전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사업자의 자가 측정 결과 보고 3. ~ 15. (현행과 같음) 1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다.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라. 청문 마. 파태료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39조 제3항 (현행과 같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시장·군수
⋮	⋮	⋮	⋮	⋮	⋮	⋮	⋮

현행				개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차.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u> <u>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u> <u>타.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u> <u>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u> <u>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u> <u>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지</u> <u>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사항</u>	같은 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제37조 제8항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4. ~ 42. (생략)	(생략)		4. ~ 4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로 철도과	1. ~ 32. (생략) (신설)	(생략)	시장· 군수	도로 철도과	1. ~ 32. (현행과 같음) 33. 건설기계 검사 등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시장· 군수
⋮	⋮	⋮	⋮	⋮	⋮	⋮	⋮

현행				개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권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권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1. ~ 6. (생략)	(생략)	시장·군수	아이스라엘 지원과 여성가족 행복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1. ~ 6. (현행과 같음)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공동 -	(현행과 같음)	시장·군수
⋮	⋮	⋮	⋮	⋮	⋮	⋮	⋮
도시계획과	1. ~ 2. (생략) (신설)	(생략)	시장·군수	도시계획과	1. ~ 2.(현행과 같음) 3. <u>대도시에 대한 특별법</u> <u>적용 이전에 도시사가</u> <u>지정산업단지에 관한</u> <u>다음의 권한(포항시-</u> <u>영일만, 영일만2)</u> <u>가. 지정(개발계획)</u> <u>변경</u> <u>나. 산업단지 지정</u> <u>등의 고시 등</u> <u>다. 산업단지 지정</u> <u>해제</u> <u>라. 산업단지의 전환</u> <u>마. 사업시행자의 지정</u> <u>바. 실시계획(변경)의</u> <u>승인</u> <u>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u> <u>및 관계서류 사본의</u> <u>송부</u> <u>아. 실시계획승인에</u> <u>관한 협의 등</u> <u>자. 공공시설의 귀속</u> <u>및 양도에 관한 의견</u> <u>청취</u>	(현행과 같음) 「 <u>지방자치법</u> , <u>제175조</u> 「 <u>산업입지</u> <u>및 개발에</u> <u>관한 법률</u> , <u>제73조제2항</u> <u>같은 법</u> <u>제73조의4</u> <u>같은 법</u> <u>제133조제3항</u> <u>같은 법</u> <u>제133조의2</u> <u>같은 법</u> <u>제16조</u> <u>같은 법</u> <u>제183조제3항</u> <u>같은 법</u> <u>제193조의2</u> <u>제1항</u> <u>같은 법</u> <u>제213조</u> <u>제2항</u> <u>같은 법</u> <u>제263조</u> <u>제3항</u>	시장·군수

현행				개정안			
[별표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	：	：	：
축산정책과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장을 포함한다)	동물방역과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장을 포함한다)
：	：	：	：	：	：	：	：

현행				개정안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	：	：	：
에너지산업과	1. ~ 5. (생략)	(생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에너지산업과	1. ~ 5. (현행과 같음) - 토지정보과 다음으로 위치 조정 -	(현행과 같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	：	：	：	：	：	：
환경안전과	1. (생략)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차. (생략) 카.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 임명 신고의 수리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신설) 3. ~ 7. (생략)	(생략) (생략) 같은법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1호 (생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안전과	1. (현행과 같음)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삭제) 칸. 개선계획서의 접수 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3.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법 제39조 제3항 (현행과 같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	：	：	：	：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과학기술, 건설
도시”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장제9절(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 및 도시·건축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및 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 및 업무 담당국장”을 “도시재생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또는 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지사) ① ~ ② (생략) ③ 경제부지시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통상,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과학기술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해안 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제9절 노인전문간호센터 제68조(설치) ① 만성질환 및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노인전문간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에 둔다. 제69조(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부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과학기술, 건설도시----- ----- 2. <삭 제> 2. ~ 4. (현행 제3호에서 제5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제7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 <u>1.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u> <u>2. 전문요양센터 시설의 관리 운영</u> <u>3. 요양치료·간호 및 재활 서비스 제공</u> <u>4. 간병전문요원 교육·양성</u>	〈삭 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494명”을 “7,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39명”을 “2,245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별표 2]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3% 이내	36% 이내	5%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2, 7급 3)은 제외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38% 이내	62%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상당
비 율	25% 이내	55% 이내	20%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0% 이내	33%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직 급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자유 구 역 청
합 계		7,500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2,072	-					
	2급	1				1		
	2 ~ 3급	2	1	1				
	3 급	12	9		1	2		
	3 ~ 4급	2	2					
	4급	95	63	8	5	9	9	1
	5급 이하	1,946	-					
	전문경력관	14	-					
별 정 직	소 계	17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연 구 직	소 계	242	-					
	연구관	44			43		1	
	연구사	198	-					
지 도 직	소 계	30	-					
	지도관	10			10			
	지도사	20	-					
소 방 직	소 계	5,095	-					
	소방정	24	5		19			
	소방령 이하	5,071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494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2,239명</u> 2 · 3 · 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u>7,500명</u>..... 1. <u>2,245명</u> 2 · 3 · 4.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소재”란 천연원료로 제조하여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바이오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유해성 및 생태계 독성을 최소화한 소재로서 원료·생산·소비·폐기·재활용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소재를 말한다.
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소재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소재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친환경소재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의 창업 지원
2. 친환경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3. 친환경소재산업 국내외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홍보 지원
4. 친환경소재산업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소재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지도 지원

6. 친환경소재산업 기술동향,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출연 연구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
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
평등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
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양성

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청소년육성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계정별 용도) ①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2.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장학금 지원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3.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또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다문화가족지원 분야 전문가
3.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
4. 청소년육성 분야 전문가
5.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민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 및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제41조 및 제56조”를 “제11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을 삭제한다.

③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으로 한다.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도록 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u>도지사는</u>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u>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u> 다음 각 호의 <u>사항에 관하여</u> 심의·조정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3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u>도지사는</u> <u>법 제11조의 2에 따라</u> ----- ----- -----. ② <u>위원회</u>----- ----- <u>사항을</u>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u> 5.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8. “교육재난”이란 일정기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을 발생하게 하는 재난을 말한다.
9.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재난지원금) ① 도지사는 중대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8. “교육재난”이란 일정기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 적인 손해 등을 발생하게 하는 재난을 말한다. 9.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 ----- ----- ----- -----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② <u>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u>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u>
4. (생 략) ②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조의2(교육재난지원금) ①</u> <u>도지사는 중대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② <u>교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u> ③ <u>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u>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및 영유아
(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모성과 가정을 이루거나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7.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를 말한다.
8.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난임(難妊)”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10.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 한다)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1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자·부자 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4. 난임 극복 지원 사업
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6.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 사업
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9.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10. 임산부 등 임신·출산 지원 사업
11. 임산부에 대한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 사업
12.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3. 그 밖에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산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기진통
2. 분만 관련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6.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임산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임신부에게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임신부는 임신확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
2.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
3.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및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공산후조리원 지원) ① 도지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현황, 설치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산장려금) ① 도지사는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는 출산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출산장려금의 신청·지급) 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출산장려금의 환수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 업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6.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
2. 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아동 교재·교구비
5.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6. 센터 장애아동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사업 계획
2. 센터 사업의 예산 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3. 아동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년 10월 7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道の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인 안 제6조
(경비 지원)의 조문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함(안 제6조)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원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하여야 한다.</u>	제6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할 수 있다.</u>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체육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자원 확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한 자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체육회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상담센터 설치·운영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른 심의사항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경영과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과 다목에 따른 수산물가공업を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 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어업인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 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가업승계 어업인의 자격 및 선발 기준
3. 가업승계 어업인 교육 지원 등 육성방안
4. 가업승계 어업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가업승계 어업인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정보 제공
2.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어업 관련 정책자금 지원
4. 어업 생산과 유통기반시설 지원
5. 어촌체험 및 어촌 관광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자문 등)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 어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업승계 어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어업경영 등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가업승계 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하여 영어(營漁)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년 10월 7일

제안자 : 농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2호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정의에서 어업종사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도의 유사조례에서는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난해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가업승계 농업인 정의도 농업종사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어업종사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가업승계 어업인”정의 규정 중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원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생 략) 2. “가업승계 어업인”이란 직계 존속으로부터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u>2년 이상</u>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 ----- ----- ----- ----- <u>3년 이상</u> ----- -----. 3. ~ 5.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합회의 업무)”를 “(연합회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임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중 “부단장으로”를 “부단장으로 하며, 시·군별 2명 이내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사한다”를 “감사(監査)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월 28일”을 “개최하며, 2월 28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최한다”로 한다.

제8조 중 “3분의 2 이상의”를 “과반수”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총회는 각 시·군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u>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연합회의 업무) 1. · 2. (생 략)	제2조(연합회의 업무) 1. · 2. (현행과 같음)
〈 <u>신 설</u> 〉	<u>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u>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 원은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u>부단장</u> 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구성) ----- ----- ---- 부단장으로 하며, 시·군별 <u>2명 이내로</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6조(임원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u>감사한다</u> .	③ ----- <u>감사(監査)한다</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총회) ① (생 략)	제7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개최하며,</u> <u>2월 28일</u> ----- <u>개최한다</u>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제8조(의결)</u>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u>제8조(의결)</u> ----- 과반수 -----. <u>제9조(운영지원)</u> 도지시는 연합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u>제9조</u> (생략)	<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차양면에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를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제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별표 1의 공공·공용 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과오납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생략)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 ----- -----.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 <u>광고</u>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u>차양면에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u>	5.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 -----
〈 <u>신설</u> 〉	6.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④ (생략)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u> <u>⑤ 제4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현행	개정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 다. (생략) 3.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⑤ (생략) 〈신설〉 제29조(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u>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 ----- -----. 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제3조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u>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거약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 거주자(이하 “아동 주거 빈곤”이라 한다)

- 1)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3)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중 국가·도·경상북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영구 또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거주자

라.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도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이란 아동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거종합계획 등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8. 아동 주거빈곤 거주자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④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택 및 택지의 현황
3.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4.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5.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6.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8.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9.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립)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3.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지급 및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5. 장애인 및 아동 주거빈곤 가구 주택개조
 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 자금 지원
 7.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9.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만큼을 뺀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도지사가 발의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주거권 등 주거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디자인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 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등

제16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6.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7.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북개발공사 등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의 운영비용
 2.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3. 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② 도지사는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주거 문제 상담 및 대상자 발굴 등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주택개조사업 시행) ① 도지사는 주거빈곤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주택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개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도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3. “도민안전보험”이란 도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사고”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도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도내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달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요구) 도지사는 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하므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를 “항공기 운항 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중 “국내노선에 정기적”을 “국내·국제노선에 정기·부
정기적”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하므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항공기 운항 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
제2조(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 한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상) ----- ----- -- 국내·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 ----- ----- -----.
제3조(재정지원 기간) 재정지원 기간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기간) ----- ----- -----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적립금
2.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도금고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담당사무관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비부담이”를 “경제적으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비부담이”를 “경제적으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특별장학생에게는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u>학비부담이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u>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장학금 지급) ① 특별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 특별장학생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비를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간 등) ① (생략) ② 제5조제2항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1조(목적) ----- ----- ----- ----- <u>경제적으로</u> ----- ----- ----- -----.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 ----- ----- <u>경제적으로</u>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장학금 지급) 특별장학생에게는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 -----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
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 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填)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난치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보조인력”이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난치
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성금모금)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에 따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2. 각급학교 내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3.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지원

4. 난치병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보충 학습에 관한 사항
5. 보건교사,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6. 난치병 학생 보호활동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
8.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료비 지원)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등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난치병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학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난치병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10. 7.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 수 및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체육 건강과장, 보건장학관(사),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학교보건담당 전문직, 학교보건 및 건강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로 한다.

3. 수정안 : 불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장, 보건장학관(사),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학교보건담당 전문직, 학교보건 및 건강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u>부교육감, 교육 국장, 체육건강과장, 보건장학관 (사),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학교보건담당 전문직, 학교보건 및 건강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u>	③ 당연직 위원은 <u>부교육감, 담당 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u>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문서 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광고물,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국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청의 국어교육 및 국어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를 만들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쓸 것
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쓰지 말 것
3. 외래어나 다른 나라 말,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쓸 것

③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 등의 이름)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들의 이름을 정할 때는 되도록 쉬운 말로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다만, 계획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 담당국장
2.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2.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3. 교재·교구·체온계 등 교내 물품 살균소독 및 방역 사업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3개”를 “2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 단체) ① (생 략)	제17조의2(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 단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경우 각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 ----- 2개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二 동 의 안 二

-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20. 9. 22)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20. 9. 22)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단위 : 천원)

연 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계		5개 기관	6개 사업	56,726,000	
1	일자리 경제실 (중소벤처 기업과)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운영	1,500,000	
2-1		경북테크노파크	창조경제펀드(2호) 지원	2,000,000	
2-2		경북테크노파크	경북 행복기업 혁신 벤처펀드 조성	1,500,000	
3		경상북도경제 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1,126,000	
4		경북신용 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50,000,000	
5		(주)케이엔투자 파트너스	케이엔 지방상생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 출자	600,000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연기관명	사 업 명	출연예정액	비고
계		4 개 기 관	4개 사업	4,828,960	
1	기획조정실	한 국 지 방 행 정 연 구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정책기획관
2	기획조정실	대 구 경 북 연 구 원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300,000	정책기획관
3	기획조정실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0	예산담당관
4	기획조정실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6,960	세정담당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경상북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연 기관명	사 업 명	출 연 예정액	비고
계		5개 기관	9개 사업	3,569,000	
1	과학 산업국	(재) 경북테크노 파크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창업기업 지원	375,000	과학기술 정책과
2	과학 산업국	(재) 경북테크노 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운영 지원	144,000	소재부품 산업과
3	과학 산업국	(재) 경북테크노 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 지원	265,000	소재부품 산업과
4	과학 산업국	(재) 경북테크노 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 센터 운영 지원	115,000	소재부품 산업과
5	과학 산업국	(재) 경북테크노 파크	포스텍 바이오펀드 조성 지원	200,000	바이오 생명 산업과
6	과학 산업국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720,000	과학기술 정책과
7	과학 산업국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 운영지원	350,000	소재부품 산업과
8	과학 산업국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1,300,000	바이오 생명 산업과
9	과학 산업국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 단지 조성 지원	100,000	바이오 생명 산업과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복지건강국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편성목	출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계					2,971,060	
1	사 회 복 지 과	출연금	재단법인 경북행복 재 단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운영	1,811,060	
2	사 회 복 지 과	출연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 념 관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1,160,000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관명	사 업 명	출 연 예정액	비 고
계		2개 기관	2개 사업	3,565,816	
1	자치 행정국	(재)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운영비	1,529,000	교 육 정책과
2	자치 행정국	(재)새마을 세계화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	2,036,816	새마을 봉사과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5	5	87,460,000	
		건물 기타	2	2	28,5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5	5	87,460,000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2	2	28,500,000	
	계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계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처 분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면적)				
1	건물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	• 연면적 11,800	40,700,000	'24. 12.	• 경상북도기록원 신축 • 공개경쟁입찰	자 치 행정과 (신축)
2	건물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92	• 연면적 13,184	39,200,000	'24. 12.	• 경상북도수련원 신축 • 공개경쟁입찰	인사과 (신축)
3	기타 (헬기)	119특수구 조단(K2비 행장 내)	• 1대 (중형)	25,000,000	'23. 8.	• 노후소방헬기 (카모프) 교체 • 공개경쟁입찰	소 방 행정과 (구입)
4	건물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41 외 1필지	• 연면적 957	2,520,000	'22. 12.	• 청하119안전센터 신축 • 제한경쟁입찰 (경상북도)	소 방 행정과 (신축)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면적)				
5	건물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94	• 연면적 957	2,520,000	'22. 12.	• 가천119안전센터 신축 • 제한경쟁입찰 (경상북도)	”
6	건물	칠곡군 지천면 신리산27번지 외 5필지	• 연면적 957	2,520,000	'22. 12.	• 지천119안전센터 신축 • 제한경쟁입찰 (경상북도)	”
7	기타 (관공선)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구계항	• 1척(30 톤급)	3,500,000	'22. 12.	• 어업지도선(경북 209호) 교체 • 공개경쟁입찰	어업기술 센터 영덕지소 (구입)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출 기 관 명	연 편 성 목	사 업 명	출 예 정 액	비고
계		2개 기관		3개 사업	4,560,000	
1	아 이 세 상 지원과	(재)경상 북 도 청 소 년 육성재단	출연금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재단 사무처 운영 지원	444,000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 운영 지원	1,905,000	
2	여 성 가 족 행복과	(재)경상 북 도 여성정책 개 발 원	출연금	경상북도여성정책 개발원 운영 지원	2,211,000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자치단체간”
으로, “수입으로”를 “수입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별로 징수한
부담금은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회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중 “협약서에서 규정”을 “규약에서 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u>제3조제1항</u>에 따른 시·도의 관광 업무 담당 과장, 담당, 담당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생 략) 2. <u>제6조제2항</u>의 의결범위 내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경비부담) ① <u>협의회</u>는 부담금 및 기타 <u>수입</u>으로 운영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집행) ① <u>협의회</u>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4조(회원의 책임과 의무) 회원은 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u>협약서</u>에서 <u>규정한</u>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 <u>제3조</u>----- ----- ----- ----- 1. (현행과 같음) 2. <u>제7조제2항</u>-----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경비부담) ① <u>협의회</u>의 운영 <u>경비</u>는 <u>자치단체간</u> ----- ---- <u>수입</u>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별로 징수한 부담금은 <u>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여</u>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계·집행) ① <u>협의회</u>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원의 책임과 의무) ----- ----- <u>규약서</u>에서 정 ----- -----.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 연 기관명	사 업 명	출 연 예정액	비 고
계		1개 기관	4개 사업	2,974,000	
1	환경산림 자 원 국	(재)경상북도 환경연수원	경상북도 환경 연 수 원 운 영	2,645,000	환경정책과
2	"	"	건 축 물 내 진 성능 보강공사	159,000	"
3	"	"	환 경 문 화 활 성 화 사 업	150,000	"
4	"	"	힐 링 가 든 봉 사 단 운 영	20,000	"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 ·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 · 출연

(단위 : 천원)

연 번	실 국	출자 · 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계		5개 기관	8개 사업	35,539,773	
1	문화관광 체육국	한국국학 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운영지원	5,400,000	문화예술과
2	문화관광 체육국	한국국학 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개보수	500,000	문화예술과
3	문화관광 체육국	경북문화 재단	경북문화재단 운영지원	2,802,168	문화예술과
4	문화관광 체육국	경북문화 재단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 운영지원	500,000	문화산업과
5	문화관광 체육국	경북문화 재단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	400,000	문화유산과
6	문화관광 체육국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콘텐츠 진흥원 운영지원	2,037,605	문화산업과

연 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7	문화관광 체육국	문화엑스포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4,500,000	문화산업과
8	문화관광 체육국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 공사 출자	19,400,000	관광정책과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연기관명	사 업 명	출연예정액	비 고
계		1개 기관	2개 사업	3,234,000	
1	농축산 유통국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	본원 출연금	1,796,000	농식품 유통과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1,438,000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 기 관 명	사 업 명	출 연 예 정 액	비 고
계		2개 기관	2개 사업	2,376,560	
1	해양 수산국	(재)환동해 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1,300,000	독도해양 정책과
2	해양 수산국	(재)독도재단	독도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1,076,560	독도해양 정책과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재산: 106,329,875천 원

- | | |
|----------------|----------------|
| - 토 지: 1,227㎡ | 605,930천 원 |
| - 건 물: 35,266㎡ | 104,482,125천 원 |
| - 공 작물: 2,800㎡ | 1,241,820천 원 |

1)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부지 취득(1건)

-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1,227㎡ 605,930천 원

2)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8건)

- | | | |
|---------------------|---------|---------------|
| - 안동여자고등학교
(교사동) | 15,090㎡ | 39,736,600천 원 |
| - 백원초등학교
(교사동) | 3,345㎡ | 10,458,256천 원 |

- 홍해서부초등학교 (교사동)	2,983m ²	9,870,637천 원
- 경북세무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1,395m ²	3,921,857천 원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동)	1,872m ²	5,792,120천 원
- 경북드론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2,776m ²	7,697,533천 원
-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969m ²	3,347,213천 원
- 상도중학교 (다목적강당)	969m ²	3,347,213천 원

3)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취득(2건)

-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청사)	3,267m ²	10,288,705천 원
-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 (도서관)	2,600m ²	10,021,991천 원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작물 취득(1건)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야외실습장)	2,800m ²	1,241,820천 원
-------------------------	---------------------	--------------

□ 처분재산: 706,034천 원

- 토 지: 20,846m² 422,398천 원
- 건 물: 1,439m² 274,005천 원
- 공작물: 4식 6,690천 원
- 입목죽: 21주 2,941천 원

1) 폐교재산 매각(3건)

- (구)죽장초등학교 가사분교장 8,569m² 88,151천 원
- (구)의성남부초등학교 비봉분교장 5,531m² 264,604천 원
- (구)부곡초등학교 6,746m² 353,279천 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변경: 2,408,412천 원

1)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토지 취득면적
및 금액 변경

- 당초 토지 면적 및 금액 5,000m² 1,000,000천 원
- 변경 토지 면적 및 금액 3,097m² 681,340천 원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10. 7.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재산 1건**은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취득의 건**(토지 191㎡, 건물 2,080㎡) **삭제**

3. 수 정 안 : 불임

4. 수정안 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없음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중 “가. 취득재산: 114,746,513천 원, 토지: 1,418㎡ 637,407천 원, 건물: 37,346㎡ 112,867,286천 원”을 “가. 취득재산: 106,329,875천 원, 토지: 1,227㎡ 605,930천 원, 건물: 35,266㎡ 104,482,125천 원”으로 하고 “1) 다양한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부지 취득(2건)”을 “1)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부지 취득(1건)”으로 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수학 문화관 191㎡ 31,477천 원”을 “삭제”하고 “3) 다양한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취득(3건)”을 “3)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취득(2건)”으로 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수학 문화관 2,080㎡ 8,385,161천 원”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가. 취득재산: <u>114,746,513천 원</u> - 토 지: <u>1,418㎡ 637,407천 원</u> - 건 물: <u>37,346㎡</u> <u>112,867,286천 원</u> - (생 략) 1)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부지 취득(2건) - <u>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u> <u>191㎡ 31,477천 원</u> - (생 략) 2) (생 략) 3)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취득(3건) - <u>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u> <u>(수학문화관) 2,080㎡</u> <u>8,385,161천 원</u> - (생 략) - (생 략) 4) (생 략) 나~다. (생 략)	가. 취득재산: <u>106,329,875천 원</u> - 토 지: <u>1,227㎡ 605,930천 원</u> - 건 물: <u>35,266㎡</u> <u>104,482,125천 원</u> - (현행과 같음) 1)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부지 취득(1건) - (삭 제)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취득(2건)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ㄹ 승 인 안 ㄹ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20. 10.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감사기간 : 2020. 11. 9. (월) ~ 11. 22. (일) / 14일간

□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운영

□ 감사 대상기관 : 87개 기관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 1
- 경상북도 : 40 [본청(지역본부 포함) 22, 직속기관 및
사업소 18]
- 경상북도교육청 : 19 [본청(직속기관 포함) 7, 시군 교육
지원청 12]
- 지방공기업 : 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지방의료원 : 3 [포항·김천·안동의료원]
- 출자·출연기관 : 19 [경북행복재단 등]
- 위탁·보조단체 : 3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
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 첨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ㄱ 결 의 안 ㄱ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춘우 의원('20. 10. 16)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요구 일시

- 2020. 11. 6.(금) 14:00(1차 본회의)
- 2020. 11. 23.(월) 11:00(2차 본회의)
- 2020. 11. 30.(월) 14:00(3차 본회의)
- 2020. 12. 1.(화) 14:00(4차 본회의)
- 2020. 12. 14.(월) 11:00(5차 본회의)
- 2020. 12. 18.(금) 11:00(6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주요내용 :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답변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의정 활동 보고서

(제319회 임시회)



2020. 12. 인쇄 / 2020. 12.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 매 품>